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



2008.12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발 간 사



해마다 태풍, 호우, 대설 등의 자연재난으로 연평균 약 2만 4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 · 농경지 등 사유재산피해로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피해민들에게 정부에서는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 개정을 통하여 신속한 재활이 가능하도록 사회구호적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 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 농경지 · 해양수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해당 부처별, 자치단체 부서별 지원부서가 분산되어 복구비 지원이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으나, 2006년부터는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신속한 복구비지원체계를 구축 ·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폭 개선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2006~2008) 질의 · 응답한 내용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의 적용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피해주민과 자치단체 복구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수행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책자가 재해복구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선 담당 공무원에게 수요자 중심의 복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08년 12월

소방방재청장 최 성 룡

Contents

발 간 사

Ⅰ 관련 법령·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3
- 자연재해대책법 ····· 3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Ⅱ 자연재난 복구지원 흐름도

- 자연재난 보고 및 복구계획수립 ····· 13
-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 14
-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 15
- 피해규모별 복구비 지원기준 및 규모 ····· 16

Ⅲ 질 의 응 답

제1장 피해신고 범위 및 절차 ····· 19
1-1 : 적용범위 ····· 19
1-2 : 피해신고 ····· 19

제2장 인명 및 이재민구호 ····· 25
2-1 : 인명피해 ····· 25
2-2 : 이재민구호 ····· 30
2-3 : 주생계수단 ····· 37

제3장 시설피해 지원 ····· 41
3-1 : 주 택 ····· 41
3-1-1 : 주택 전·반파 ····· 42
3-1-2 : 주택침수 등 ····· 49
3-1-3 : 1가구 2주택 ····· 55
3-1-4 : 무허가 주택 ····· 58

3-2 : 농림시설 ····· 61
3-2-1 : 비닐하우스 ····· 64
3-2-2 : 인삼재배시설 ····· 65
3-2-3 : 농산물 저장시설 ····· 66
3-3 : 해양수산시설 ····· 68

제4장 농경지·농작물피해 지원 ····· 73

제5장 기타 피해 지원 ····· 79
5-1 : 선 박 ····· 79
5-2 : 조경수 ····· 81
5-3 : 낙 뢰 ····· 81

제6장 국고지원 제외대상 ····· 84
6-1 : 공사중 피해 등 ····· 85
6-2 : 지방관리 공공건물 피해 ····· 89
6-3 : 중소기업(공장 등) 피해 ····· 90
6-4 : 동산 피해 ····· 91
6-5 : 가로수에 의한 동산(자동차) 피해 ····· 92
6-6 : 종교시설 등 피해 ····· 93

제7장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94

제8장 채권압류 금지 ····· 99

제9장 기 타 ····· 102

Ⅳ 별 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1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 138

Ⅴ 색 인

Ⅰ. 관련 법령·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Ⅰ. 관련 법령·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국고보조 등) ①국가는 재난관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농림어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선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주민의 주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 행 령

제38조 (복구비의 선지급 대상 비율 · 절차 등)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과 같다.
②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선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본부장과 협의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36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②중앙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지급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시 행 령

제39조(복구비 등의 반환) 법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수립하는 재해복구계획에 행정착오 등으로 복구비·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이 잘못 포함된 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착오 등으로 복구비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3. 복구비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행 령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영어·영림·양축(養畜)·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다.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①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 항에서 "보통세등연평균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14억원
2.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0억원
3.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6억원
4.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32억원
5.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 38억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군·구에 대하여 당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가목 내지 바목과 동항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6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

투자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

제7조(국고의 추가지원)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동표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 나목 또는 동항 제2호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외에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 · 판매량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 · 패류 · 종묘 입식 및 출하 · 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 · 생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 · 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은 재난의 성질 · 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 · 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 · 면 · 동장은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 어망 · 어구, 수산물 증식 · 양식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자연재난 복구지원 흐름도

자연재난 보고 및 복구계획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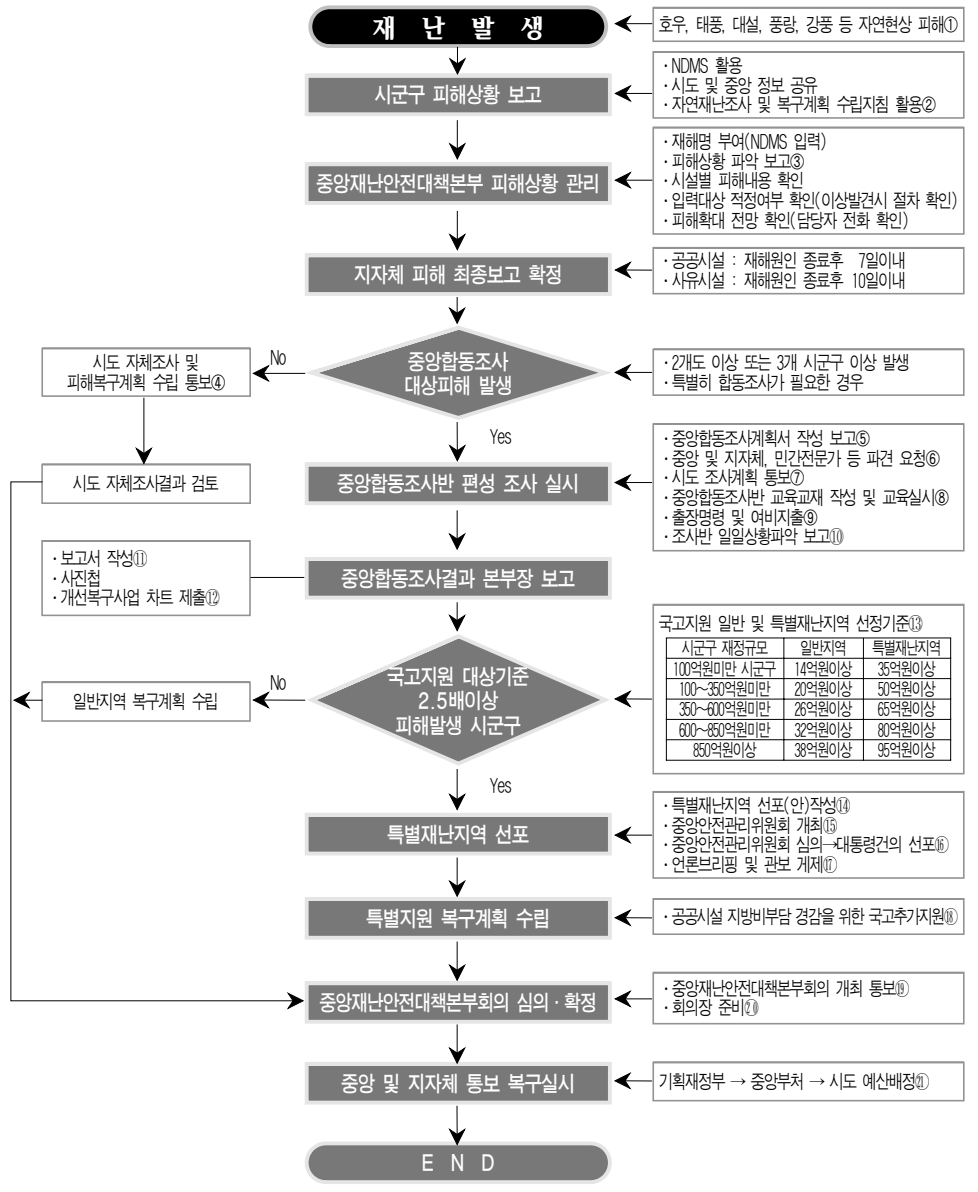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피해규모별 복구비 지원기준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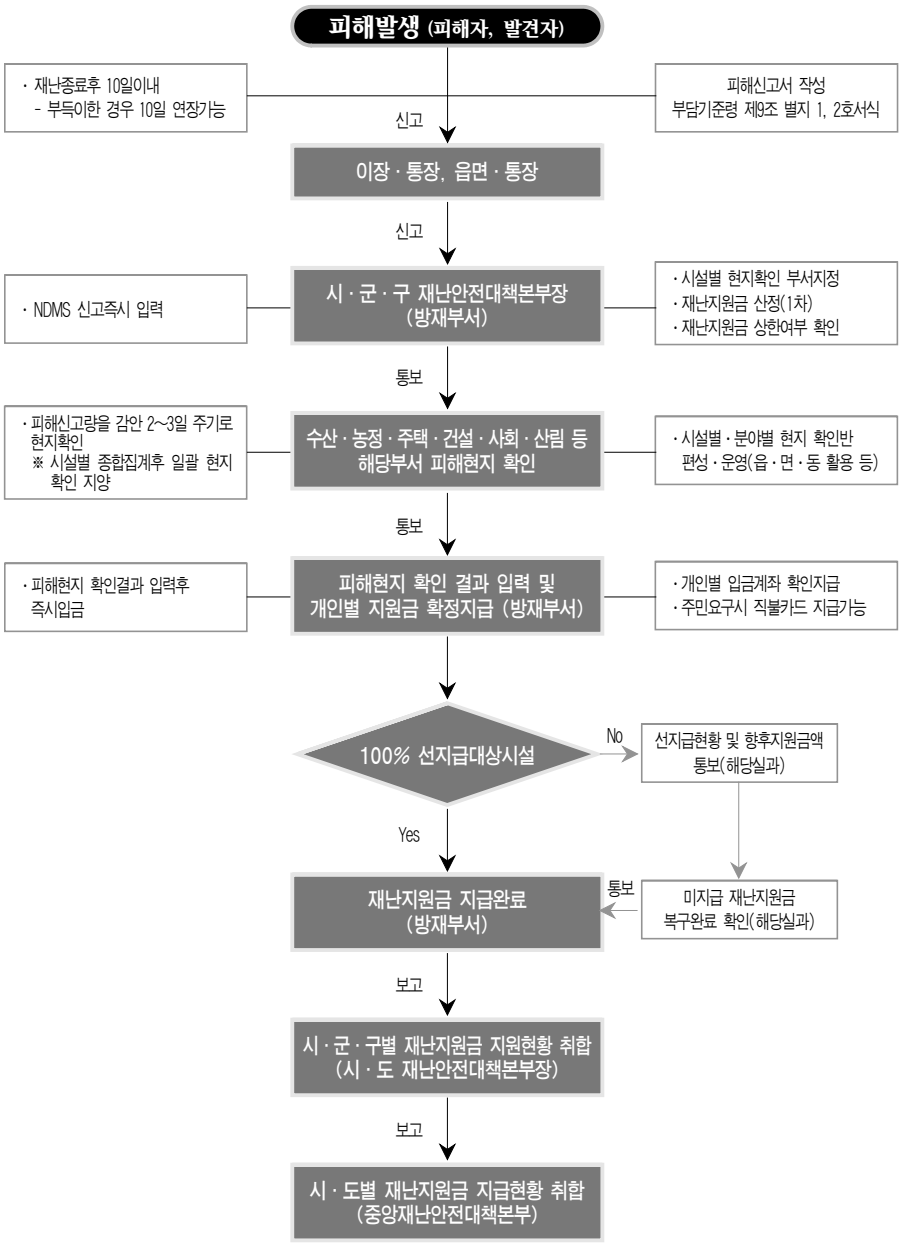
Ⅱ. 자연재난 복구지원 흐름도

자연재난 보고 및 복구계획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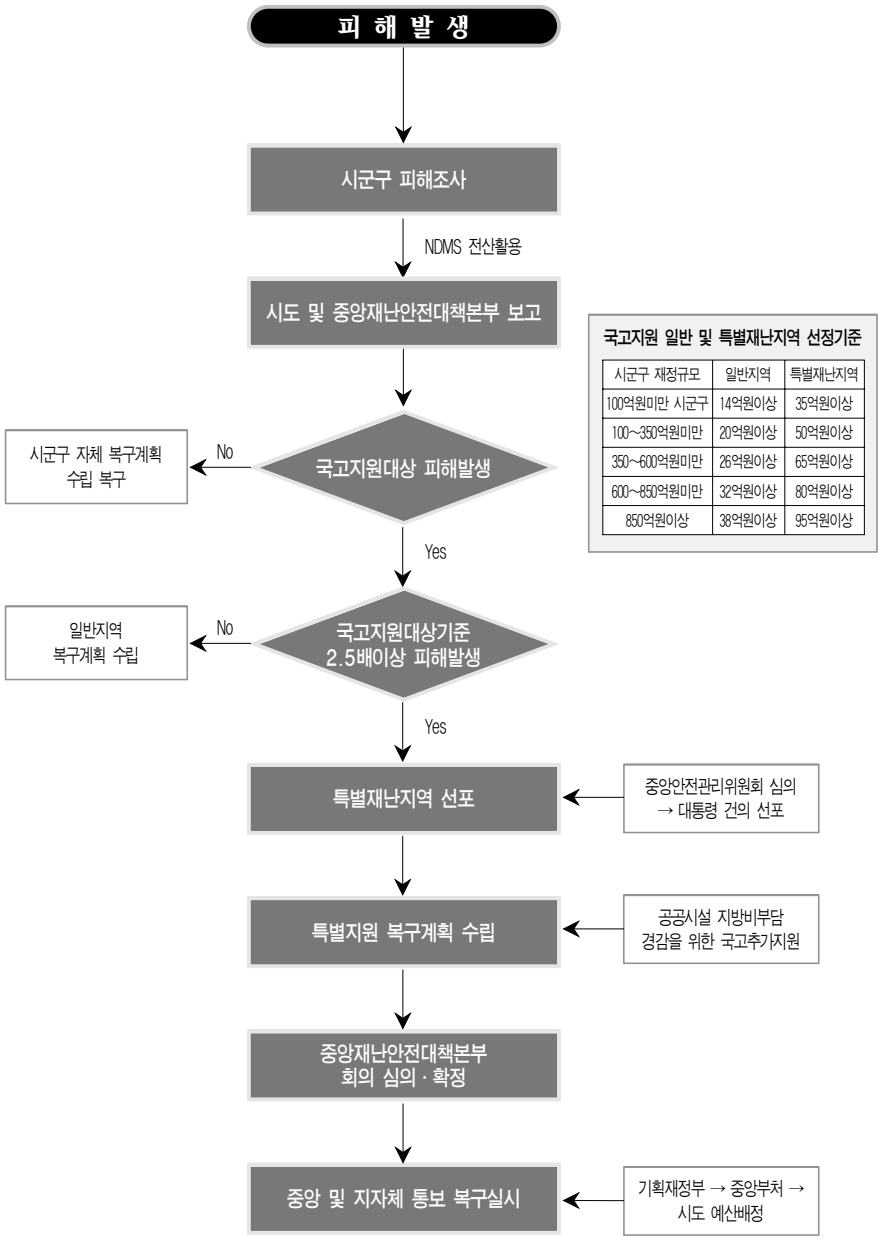


시군구 재정규모	일반지역	특별재난지역
100억원미만 시군구	14억원이상	35억원이상
100~3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50억원이상
350~600억원미만	26억원이상	65억원이상
600~850억원미만	32억원이상	80억원이상
850억원이상	38억원이상	95억원이상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국고지원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시군구 재정규모	일반지역	특별재난지역
100억원미만 시군구	14억원이상	35억원이상
100~3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50억원이상
350~600억원미만	26억원이상	65억원이상
600~850억원미만	32억원이상	80억원이상
850억원이상	38억원이상	95억원이상

피해규모별 복구비 지원기준 및 규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대 상 기 준</th><th colspan="2">지 원 규 모</th></tr>
<tr><th>공공시설</th><th>사유시설</th></tr>
<tr><td>경미한 피해</td><td>
<table>
<tr><th>시군구 재정규모별</th><th>선 정 기 준</th></tr>
<tr><td>100억원 미만 시군구</td><td>피해액이 14억원 미만</td></tr>
<tr><td>100억원이상~350억원미만</td><td>피해액이 20억원 미만</td></tr>
<tr><td>350억원이상~600억원미만</td><td>피해액이 26억원 미만</td></tr>
<tr><td>600억원이상~850억원미만</td><td>피해액이 32억원 미만</td></tr>
<tr><td>850억원이상 시군구</td><td>피해액이 38억원 미만</td></tr>
</table>
</td><td>· 시설물관리자 자체 복구</td><td>· 지자체 부담지원 또는 시설물 소유자 직접복구</td></tr>
<tr><td>일반 지역</td><td>
<table>
<tr><th>시군구 재정규모별</th><th>선 정 기 준</th></tr>
<tr><td>100억원 미만 시군구</td><td>피해액이 14억원 이상 35억원 미만</td></tr>
<tr><td>100억원이상~350억원미만</td><td>피해액이 20억원이상 50억원 미만</td></tr>
<tr><td>350억원이상~600억원미만</td><td>피해액이 26억원 이상 65억원 미만</td></tr>
<tr><td>600억원이상~850억원미만</td><td>피해액이 32억원 이상 80억원 미만</td></tr>
<tr><td>850억원이상 시군구</td><td>피해액이 38억원 이상 95억원 미만</td></tr>
</table>
</td><td>• 국가 관리시설 : 국고 100%
– 국도, 국가하천, 철도, 국유림, 국립공원, 항만, 국가어항시설, 쓰레기 처리 등
• 지자체 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지방도로, 지방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시·도립공원, 도유림, 지방어항시설 등
• 소규모 시설 : 지방비 100%
• 한국농촌공사 수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td><td>• 국고 및 지방비 지원
•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관계없이 동일기준 지원
지원방식
• 개인별 총피해사항을 합산 250개 재난등급화 일괄 지원(최고 2억원)
※ 2010년부터는 최고 5천만원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 지원기준 단가는 매년 소관부처에서 고시</td></tr>
<tr><td>특별 재난 지역</td><td>• 일반지역 피해액의 2.5배이상 피해 발생시
<table>
<tr><th>시군구 재정규모별</th><th>선 정 기 준</th><th>지방비 부담경감을 위한 국고 추가지원 기준</th></tr>
<tr><td>100억원 미만 시군구</td><td>피해액이 35억원 이상</td><td>(지방비 총부담액 - 3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50~80%)</td></tr>
<tr><td>100억원이상~350억원미만</td><td>피해액이 50억원 이상</td><td>(지방비 총부담액 - 50억원)× 국고 추가지원율(50~80%)</td></tr>
<tr><td>350억원이상~600억원미만</td><td>피해액이 65억원 이상</td><td>(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50~80%)</td></tr>
<tr><td>600억원이상~850억원미만</td><td>피해액이 80억원 이상</td><td>(지방비 총부담액 - 80억원)× 국고 추가지원율(50~80%)</td></tr>
<tr><td>850억원이상 시군구</td><td>피해액이 95억원 이상</td><td>(지방비 총부담액 - 9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50~80%)</td></tr>
</table>
※ 국고 추가지원율 =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 지원율 + 재해대책평가 결과 지수
※ 시군구 재정규모 =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td><td>• 지방비 부담경감을 위한 국고추가지원
• 공공 및 사유시설별 국고 지원기준은 일반지역과 같음</td><td></td></tr>
</table>

Ⅲ. 질 의 응 답

- 제1장 피해신고 범위 및 절차
- 제2장 인명 및 이재민구호
- 제3장 시설피해 지원
- 제4장 농경지·농작물피해 지원
- 제5장 기타 피해 지원
- 제6장 국고지원 제외대상
- 제7장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제8장 채권압류 금지
- 제9장 기 타

Ⅲ. 질 의 응 답

제1장 피해신고 범위 및 절차

1-1 : 적용범위

질 의

기상특보(주의보 · 경보 등)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사유시설(수산증양식시설, 수산생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비가 지원되는지?

답 변

○ 자연재난의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의거 기상특보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경우로써,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또는 기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등은 자연재난의 적용범위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유시설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권자인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당시 기상여건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복구비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1-2 : 피해신고

법적근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 나목 또는 동항 제2호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외에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락피해 복구계획수립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피해조사보고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시설 및 이재민이 복구계획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누락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준용,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하여야 함

○ 인명 및 선박·어망피해 발생시는 피해자 주소지 및 선적지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통보 또는 보고가 늦어 복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락시는 피해발생지역 관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원조치하여야 함

질 의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는지? 아니면, 피해발생 농경지·시설물 관할 읍면동사무소인지? 또한, 피해조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답 변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인명, 선박과 어망·어구는 피해자주소지 및 선적지에 신고하고 농경지와 시설물 등의 피해는 피해가 발생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피해조사는 피해가 발생한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있음.

질 의

주택이 침수되어 동사무소에 피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간이 지나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답 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제2항에 의거 피해를 입은 자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의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있음.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써, 누락된 피해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음.

질 의

1) 주택침수피해를 입어 행정기관에서 2차에 걸쳐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별도의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된다고 함. 행정기관이 배수작업을 했으니 당연히 기록이 남고 피해보상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 태풍으로 농경지 및 시설물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못하여 조사에서 누락된 경우 면사무소에서 재조사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재난사실을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여 누락된 경우에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음.

질 의

신고기간 및 입력기간이 상당히 지난후 재난지원금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들어 지원불가를 통보하였으나, 민원인의 정황이 확실하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꼭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 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내 피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피해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질의에 대한 처리는 복구계획수립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 의

폭설피해로 인삼재배시설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피해면적이 실제 피해면적보다 작게 계산되어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수량 산정시 누락, 착오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누락된 수량에 대하여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질 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의한 신고기간(10일)이 경과하고 2~3개월 지난 후에 피해신고를 한 경우, 복구비지원 가능여부와 불가시 사유 및 신고기간은?

답 변

○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의한 신고기간(10일)내 신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당해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 동 기간내 피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피해자의 귀책사유로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복구계획수립권자인 해당 시·군·구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지원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질 의

집중호우로 80세 노인이 급류에 휘쓸려 119구조대에 긴급구조 되었으나 익일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로써, 중앙복구계획수립 이후 인명피해 신고가 들어왔다면 추가접수 가능여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피해조사시 누락된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음.

제2장 인명 및 이재민구호

2-1 : 인명피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사 망 실 종 부상자	•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조사 및 보고, 거주지 시군구에 통보 •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조사 •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 • 방재기획팀-1582(2006.5.16)호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참조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7급이상이어야 하나 우선 객관적 기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7급이상이 예상될시 피해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 • 외국인은 복구대상에서 제외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행방불명 포함), 장제비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 부상자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7급 이상시 구호금을 지급

인명피해 국고지원 제외대상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실수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제외

① 법적근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 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7~8 (생략)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①~③ (생략)

④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원 등 이 법에 의한 응급조치
2.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비상소집
3. 당해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
4.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⑤ (생략)

제40조 (대피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45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 (강제대피조치)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 또는 위험구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 또는 위험구역안에 있는 자를 강제대피시키거나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② 예 시

-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 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다 피해를 당한 경우 등
- ○ 행정청 등으로부터 위험지역으로 판단되어 퇴거 또는 대피권고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불응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 ○ 하천 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해 사망, 실종된 경우
-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입은 피해 등
- ○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으로 무리하게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가다 급류에 사망, 실종된 경우
- ○ 불어난 하천 물 구경을 하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경우
- ○ 위험요인이 있는 가운데 농작물 관리를 위해 나갔다가 본인의 실수로 급류에 휩쓸린 경우

질 의

「인명피해 관리지침」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행방불명 포함), 장제비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복구계획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았다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답 변

○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망·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와

○ 시설물(주택, 축사, 온실)등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라 할 수 있음.

질 의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로 사랑채가 붕괴되어 부친을 잃었는데, 본채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재난으로 적용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답 변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하여는 주택 붕괴건물이 본채인지 사랑채인지 여부가 관련이 없으며, 다만 사고발생지역의 기상특보 발효 여부 및 사고경위에 따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고 소재지관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기상특보 및 사고경위에 좀더 세밀히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음.

○ 설령, 기상특보가 없었더라도 태풍에 의한 강우의 여파(주택이 강우로 인한 자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과하중으로 붕괴)에 의한 주택붕괴가 확인(입증)된다면 재난지원금을 해당 시·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질 의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중 민간인과 공무원(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등)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답 변

○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됨.

질 의

직업군인(소령)과 일반사병이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軍에서 자체적인 보상규정이 있는데도 郡廳에서 또 다시 자연재난으로 인한 보상금(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을 주어야 하는지?

답 변

○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구호금은 남녀노소, 지위고하 및 직업의 종류를 막론하고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재난지수 10,000 또는 5,000이 적용됨.

질 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결정(확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여야 하는지?

답 변

○ 동 질의는 자치단체 고유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으로써 자체적으로 사무분장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질 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주택침수 또는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자가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동 이재민을 대상으로 응급구호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재민에는 사망자도 포함되는지?

답 변

○ 이재민 응급구호금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계를 위한 지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망자는 이재민 응급구호대상이 아님.

질 의

사망자의 호적상 남동생을 유족으로 보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의 복구계획수립요령에 의거 사망자 구호금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하고 있음.

질 의

폭우로 인하여 상류지역의 우수가 짧은 시간에 다량 유입되면서 어린이가 급류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월교를 횡단하다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 경우, 어린이가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의 사고유형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답 변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기획팀-1582(2006.5.16)호에 의한 "자연재난의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을 정하고 있으므로

○ 인명피해의 자연재난 판단여부는 사고당시의 상황과 현장의 여건, 경찰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2 : 이재민구호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이재민 구 호	ㅣ응급구호ㅣ ● 주택이 침수 또는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함 ※ 침수나 제방붕괴 등이 우려되어 일시 대피 후 귀가한 경우에는 응급구호대상에서 제외함 ㅣ장기구호ㅣ ●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사함 ● 주택피해 이재민 확정시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제외 – 전·월세입자는 제외 – 침수주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ㅣ응급구호ㅣ ● 최초 7일간의 응급구호를 실시하되, 복구계획수립 대상에는 제외 ● 1인 1일당 5,000원 지급 ●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ㅣ장기구호ㅣ ● 지원기준지수 : 1인 1일 5 적용 – 주택 반파 : 23일간 구호비 (7일간 응급구호비 공제) – 주택 전파·유실 : 53일간 구호비 (7일간 응급구호비 공제)

법적근거

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영어·영림·양축(養畜)·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②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이 재 민

협의적인 개념	광의적인 개념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호 대상자로서 주택 전·반파 등의 피해자를 말함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사망·실종자의 유·가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신체장해 등급 7급이상 부상자와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어·염업이 50%이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함

질 의

수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이 "이재민으로 결정된 날"은 언제인지?

답 변

○ 「이재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항에 의거 피해를 입은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구호대상자를 뜻하며, "재해구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및 급식 또는 침구 등의 생활필수품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이재민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 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피해확정 내용과 이재민에게 지원한 구호물품 지원내역이 다른데?

답 변

○ "재해구호법" 제7조에 따라 재해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발생이 진행중인 때에라도 지체 없이 이재민 구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재해구호물자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원 내역은 다를 수 있음.

○ 만일, 재난지원금 지원시까지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인 이재민에 응급구호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임.

「재난지원금 지원」과 「재해구호물자 지원」 비교

재난지원금 지급과 재난구호물자 지급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재난지원금 지원	재난구호물자 지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 지급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별표 1의 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구호기관은 재해 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발생이 진행중인 때에라도 지체 없이 재난구호물자 지원

질 의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 변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에게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이재민이 구호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재민 또는 통반장 등의 확인을 받거나 수령거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후 지원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질 의

수개월전에 주택침수로 구호물품을 지원하였으나, 주택피해자가 내부수리를 위하여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 구호물품을 지원하여야 하는지?

답 변

○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호물품을 지원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주택수리 후 거주하다가 재 침수된 경우 구호물품을 지원하여야 함. 다만, 일시침수로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구호물품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질 의

주택이 전파·반파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되는 것은?

답 변

○ 주택이 침수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구호물품세트(응급, 재가구호세트)와 응급구호비(침수 1일당 5천원 최초 7일간 지원), 장기구호비(전파 53일간,반파 23일간 : 1일당 5천원 지원), 재난지원금(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을 지원함.

○ 또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로 구성된 배분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국비 지원기준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성금인 의연금(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질 의

주택이 반파되었으나 반파된 주택에 피해자가 귀가한 경우,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이재민이 맞는지?

답 변

○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주택에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민에 해당됨.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확보기준은?

답 변

○ “재해구호법”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이 최근 10년간 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확보하여야 함.

질 의

주택이 반파되었으나 반파된 주택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우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재해구호물품세트를 지급해야 하는지?

답 변

○ “재해구호법” 제6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재해구호사업 지침에 따라 주택이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주택의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재해구호물품 세트를 지급해야 함.

질 의

이재민 수용시설은 누가 어느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는지?

답 변

○ “재해구호법” 제9조에 따라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마을회관, 관공서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음.

질 의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 변

○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의연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집하고, 모집된 의연금은 모집 비용을 제외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배분위원회에 납입하여야 함.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의연품을 모집하여 이재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와 상품권을 받아서 이재민에게 전달이 가능한지?

답 변

○ “재해구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품은 접수하여 전달 할 수 있으나,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개념으로 접수가 불가함.

질 의

의연금은 누가 지원하며, 사용내역은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

답 변

○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성금인 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 협회의 배분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은 동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질 의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의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답 변

○ "재해구호법" 제26조 및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에 따라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의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은 다음과 같음.

- 사망·실종자(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 부상자(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 주택(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 소상공인·생계지원 피해자 100만원

질 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소실된 경우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재해구호법" 제2조·제14조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물자의 구입·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재 등 인적재난으로 인한 경우는 사용이 불가함.

질 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주택피해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에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재해구호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8조·제9조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조례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피해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이 가능함.

2-3 : 주생계수단

법적근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10. (생략)

재난지원금 지원

○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가·어가·임가·염가에 한해 이재민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어업·염생산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와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질 의

피해농가가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이 있을 경우, 이재민 구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시설복구비는 지원대상이 아닌지?

답 변

○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질 의

피해농가의 자녀 및 손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으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생계지원 대상이 되는지?

답 변

○ 현지를 확인해서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 독립된 가정경제를 이루고 있다면 지원대상임.

질 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구성원(자녀, 손자 등)이 회사원 또는 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농업소득이 가구 전체소득 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할 경우 생계지원 대상이 되는지?

답 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 지원 기본방침은 사회구호(생계구호) 차원에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은 제외하고 있으나, 회사원, 상업 등의 소득이 사회통념상 가계유지(생계 등의 생활비)에 소요되는 비중이 농업보다 낮아 부업에 가까운 수준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동 질의 건은 획일적으로 지원 여부를 답변하기 어려운 것으로써 복구비 지원의 기본취지와 지침 등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적의판단 조치하여야 할 것임.

질 의

피해농가 세대원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세대원(공무원, 회사원, 상업)의 수입액이 피해농가의 50% 이상을 차지할 시에 제외되는 것인지?

답 변

○ 피해농가 세대원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원, 사업의 개념이 광범위하므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나 기본적 생계충족이상의 소득 여부와 아파트 등의 경비 등은 회사원 개념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주생계수단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임.

○ 주생계수단과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기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어 도저히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의 복구비지원 기본원칙을 충실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시·군·구에서 적의 조치하여야 할 것임.

질 의

김양식장이 파손된 경우로써, 김양식장 파손 피해자는 어업권자이고 배우자는 횟집(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어업 등의 피해를 입을시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 주생계수단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획일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재난지원금의 지원 기본취지와 피해주민의 실제 주생계수단이 무엇인지 등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의 조치하여야 할 것임.

질 의

주생계수단이 농업이 아닌 일반 회사원의 주택이 전파, 반파, 침수된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일반 공장, 점포(지하다방 등) 등의 침수시에는 주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등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닌지?

답 변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빈집 제외) 주택피해에 대하여는 주생계수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점포·공장·다방 등은 주택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님.

질 의

민간 어린이집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자연재난으로 인한 복구비 지원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주생계수단이 농림·어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인 등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이 아님.

질 의

주차장 영업을 위한 철골트러스가 대설시 붕괴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복구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임·어·축·염생산업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농가, 임가, 어가, 축산가 및 염생산가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님.

제3장 시설피해 지원

3-1 : 주 택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주택 파손 유실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전파·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 제외 ● 피해구분 : 전·반파 구분은 피해면적율 및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여부로 판단 ※ 관사등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공공건물로 분류	● 반파 또는 침수 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 ●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재난지원금및 융자금 전액 지원 ※ 피해발생 시·군·구내의 주택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택의 융자비율(60%)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음.
주택 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전·월세입주자도 포함(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을 시는 대상에 포함) ● 1인 소유의 부지내 건물이 2동이상 있을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 주거용 관사등의 경우도 포함 ●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 제외	※ 〈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 세입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주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을 건물주에게 지급토록 함. ※ 주민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 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용어 정의

① 주택유실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② 주택전파 :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주택반파 :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④ 빈　　집 :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있는 집은 빈집이라 할 수 없음)

3-1-1 : 주택 전·반파

질 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공무원, 회사원, 상·공업인 경우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택피해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아닌지?

답 변

○ 세대주나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공업인인 경우에도 주택피해에 대하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이재민구호와 제4조제1항제2호의 재난복구사업은 지원대상임.

질 의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할 과제는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을 높게 책정해 주어 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지?

답 변

○ 정부의 복구비 지원방침은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본인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소유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임.

○ 귀하의 지적처럼 주택복구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지원항목 중 일부만 현실화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정부재정형편이 고려되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질 의

주택 소파(小破)피해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답 변

○ 정부지원 대상에서 주택 소파기준이 없는 것은 피해종류 및 규모가 다양하여 피해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다르기 때문에 검토 불가함.

질 의

주택전파시 사유시설 재해복구비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900만원으로 어떻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답 변

○ 주택 등 사유시설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구호비와 복구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피해주민들의 욕구수준에는 매우 미흡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08년부터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을 전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질 의

주택전파일 경우 재난지원금 900만원이 지급되는데, 주택복구를 포기할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9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 변

○ 주택피해의 경우, 복구포기와 관련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함

질 의

정부에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전파일 경우 14백만원, 반파일 경우 7백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군청직원은 주택이 전파되었으나 집을 다시 짓거나 새로 사지 않으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회수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 변

○ '06년 1월부터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가 달라져 주택 전·반파시 재난지원금이 선지급되고 있으며, 주택전파시에는 복구여부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이 지원됨.

질 의

○ 한 개의 주택이 호우가 지속되면서 지붕(목조기와)에 물이 스며들어 일부 무너져 내렸음. 이 집은 30평형(1동) 중반대로 반은 공가로 쓰이며 반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1. 건축물관리자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노후주택 지붕에 물이 스며들어 무너져 내렸을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는지?
2. 관리를 하지않은 공가부분 지붕이 거의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주택붕괴 조사시 복구계획 물량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재개발계획(확정 안됨)과 관련, 집주인이 주택복구에 의지가 없을 때에도 무너진 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

답 변

○ 시설물 관리자는 자신의 건축물에 대하여 선량한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나 관리소홀 부분을 명백히 가려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 귀 질의 내용처럼 건축물 1동을 주거, 비주거로 나누어 전,반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 1동을 기준으로 전, 반파 지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타 사업계획의 승인, 인가 등이 없었으면 주택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함.

질 의

호우주의보로 인해 일부 주택(주거용) 및 부속건물이 반파이상 정도 피해를 입어 피해신고서가 접수되었음. 흙벽돌집이어서 자연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집(노후주택)에 이런 피해가 났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변

○ 노후로 인한 주택붕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주택관련 부서의 전문직 공무원이 현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 의

태풍으로 시골집의 아래채(방+외양간+곡간) 가옥 1동이 폭싹 내려앉음. 현장조사를 마친 면사무소 및 구청에서는 "아래채 가옥은 윗채의 부속건물이므로 피해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철거비용은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주택피해에 대하여는 직접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에 대하여 전·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부속건물과 빈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질 의

수해피해로 인한 건축(주택)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 변

○ 주택폐기물 처리에 대하여는 쓰레기 발생 원인제공자가 처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인 것으로 판단되나, 귀 郡에서 처리코자 한다면 예산과목 등에 대한 사항은 귀 郡 및 귀하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질 의

집을 임대하여(친척관계로 무료임대) 살고 있던중 폭설로 인해 주택이 전파된 경우, 전파복구비를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시 실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답 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지원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써

○ 귀 질의처럼 임대주택이 전파를 입었다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복구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임차인은 건축물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반환받고, 정부지원금인 세입자 보조의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질 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서 "마을기반조성"이라 함은 주택부지 조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소공원·체육시설 등은 마을기반조성 개념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소공원·체육시설의 범위(종류)는 어디까지인지(테니스장 등이 포함되는지)?

답 변

○ 10동이상을 집단이주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마을기반조성사업은 마을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적 기반공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단지구획,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등의 사업이 주된 목적으로써, 체육시설 등의 설치는 다소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겠으나 본 사업목적에 원칙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 의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의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답 변

○ 주택피해는 선지급률이 100%로써 피해사실 확인후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산하지 아니함.

질 의

○ 주택파손상태를 확인하여 반파주택으로 복구비를 지원하였으나 집단이주지역에 신축이주를 희망하여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추후 전파기준으로 지급한 경우

– 반파주택을 이축희망하여 전파기준으로 복구비를 지급한 후(반파된 주택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 금년도에 하천선에 포함되어 철거되지 않은 주택을 보상(국가가 매입)해야 하는 상태인 경우(복구비를 지급할 당시에는 하천선이 확정되지 않아 보상대상주택이 아니었음) 기지급한 복구비중 일부(전파비-반파비)를 회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축을 하는 것으로 하여 전파비를 지급했으므로 주택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답 변

○ 반파주택을 전파복구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복구공사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주택반파피해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과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손실보상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 지급한 (전파기준) 금액중 차액에 대하여는 회수 또는 보상비 지급시 감액지원하여야 할 것으로써

○ 동 질의건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하천구역 편입 확정시기 등의 현지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 의

○ 기상특보 상황에서 주택피해(전파, 반파)가 발생한 경우

1. 피해주택에 대한 지분소유자가 여러명 일 경우,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소유권도 없고 세입자도 아닐 경우 주택이 반파이상의 피해를 입어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실제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피해신고가 어려울 경우) 이재민 장기구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3. 소유자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속한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마을주민이나 실거주자가 피해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답 변

1. 주택피해 소유자가 여러명 일 경우에는 지분소유자 모두에게 각기 지급하거나 위임받은 대표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됨.
2. 주택소유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재민 장기구호 대상임.
3. 소유자의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신고는 대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 의

수해주택으로써 건축법 용도분류인 별표1인 단독주택 용도분류내에 1호 다호인 다가구주택 용도일 경우에는 수해주택으로써 보조금대상이 가능한지?(건축물대장상에는 세부용도인 다가구주택용도로 표기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답 변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은 복구비 지원대상임.

3-1-2 : 주택침수 등

질 의

"주택침수"의 정의는?

답 변

○ 주택침수에 대하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음.

○ "주택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수리'란 도배 및 장판을 새로 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방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구들장)을 뜯거나 하는 등의 대규모 수리를 뜻하는 것이 아님.

질 의

침수피해를 입은 주유소에 대해 복구비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사유재산피해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주유소는 복구비 지원 대상이 아님.

질 의

입식으로 개조한 부엌이 다른방보다 낮아 부엌(식당방)만 침수되었는데 방이 아니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함. 주택침수수리비 지급에서 "주거용 방"의 정의는?

답 변

○ 주택침수라 함은 주거용 방이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며, "주거용 방"이라 함은 부엌 등이 아닌 일상생활의 중심장소로써 침실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질 의

공장 기숙사가 침수된 경우 침수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건축법에선 기숙사도 공동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답 변

○ 주택침수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대상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된 경우에 한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므로 공장내 기숙사는 지원대상이 아님.

질 의

반지하 자취방이 침수되었는데 주인이 방을 만들면서 방수공사를 안하고 그냥 벽돌로 벽을 막아놓기만 해서 벽을 타고 바닥으로 스며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귀하의 경우 일반 침수인지, 건축물 부실에 따른 침수인지가 불분명함. 강우에 의한 빗물유입에 따른 일반침수피해가 아니라면 복구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의 소재지 구청에서 현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질 의

1세대의 세대원이 7명으로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으로써 2동 모두 상시 거주한 상태에서 1동(1명거주)은 침수가 되고, 1동(6명)은 침수가 되지 않은 경우, 침수주택에 해당되는지?

답 변

○ 침수주택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1인소유의 건물이 2동 있을 경우 1동만 지원토록 하고 있음.

질 의

○ 연립주택 2층에 거주하는 세대원중 학생 1명이 공부와 잠만 자고 식사는 연립주택 2층에서 하고 있던중 연립주택의 지하공부방만 침수된 경우 응급구호비와 의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또한, 침수된 지하실에 거주하지 않으나, 가재도구가 있는 방이나 창고에 대한 응급구호비와 의연금 지급은?

답 변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세부작성 요령에 의거 주택침수는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거용 방이 침수되었을 경우로써 세대원중 1명이 부수적으로 사용한 부공간은 주택침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하방이나 창고에 가재도구가 있는 경우 지하침수 또한 주택침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응급구호비 및 의연금 지급대상이 아님.

질 의

주택이 침수되어 침수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주택(목조, 흙집)이 벽에 금이 가고 점점 주저앉고 있어 재신고를 하였으나 군청에서는 예산이 없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원받을 방법은 없는지?

답 변

○ 침수되었던 주택이 집중호우 등의 직접적 여파로 반파이상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군에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 의

기존 건물의 하자(벽체, 균열, 창문틀, 방바닥 균열로 인하여 빗물유입)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된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의 피해조사요령에 따르면 "주택침수"는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해야 하는 경우로써 통상적으로 물이 바닥에서부터 차올라 잠기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건물하자 여부로 피해조사시 침수주택 모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므로 침수지역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침수유형(범람, 유입, 하자)과 주택 소유자의 관리부실 등 전체상황을 판단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질 의

주택 소유(관리)자 또는 세입자가 설치한 수중펌프 고장으로 인한 하수역류 및 누수로 주택이 침수된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답 변

○ 자연재해(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귀 郡의 자치법규와 지침 등을 검토함과 아울러 피해발생지의 현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의판단 조치할 사항임.

질 의

세입자가 모두 나가고 가재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건물주에게 침수주택수리비가 지급될 수 있는지?

답 변

○ 가재도구가 없어도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이나, 가재도구도 없고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주택침수피해는 지원대상이 아님.

※ 주택침수피해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에 대한 세부요령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참고

질 의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어 침수주택수리비를 받았으나,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또다시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연속해서 지급받을 수 없는지?

답 변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동 지침상의 피해조사요령에 의하면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며, 복구계획의 수립은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질 의

우수·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나, 주택신축시 배수설비 설치시 건물내 오수를 분리하지 않아 건물내 우수가 오수맨홀로 들어와 지하주택(건축물대장상 대피소로 되어 있음. 실제 거주함)이 침수된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원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건축 신축시 우수는 우수관, 오수는 오수관에 연결한다고 허가를 득한후 시공을 잘못하여 옥상의 우수가 오수관으로 통하여 배출됨에 따른 지하주택의 침수 사례로 이는 건축주의 행정사항 미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로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님.

질 의

침수주택 피해유형 등에 대한 좀더 세분화된 지침은 없는지?

답 변

○ 주택침수는 방바닥 이상이 물이 찬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가가호호(家家戶戶) 침수피해 유형 및 정도가 각각 달라 더 이상의 세분화된 지침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 주택 침수시 본인이 신축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파기준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3-1-3 : 1가구 2주택

질 의

본 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고, 집 외곽으로(본건물과 연결)로 하숙집을 설치하여 운영시 본 건물은 괜찮지만 하숙집이 전파되었을 경우, 주택복구비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주택피해에 대하여는 1가구 2주택이 아니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임. 다만, 본 건물 1동에 대하여만 지원됨.

질 의

1가구 2주택이상 대상자가 전파, 유실, 반파시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의 별표1에 의거 1가구 2주택자는 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님.

질 의

○ 1가구 2주택자라도 피해가 있으면 집단이주(마을기반조성)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피해가 없는 同부락의 주민이라도 집단이주대상이 되는지?

답 변

○ 1가구 2주택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나, 집단이주할 부락주민들이 2주택자에 대하여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지 등을 참작하여 포함여부를 해당 시군에서 적의판단 조치할 사항이며

○ 피해가 없는 주민도 피해발생지역의 인접지로서의 위험성 및 기존마을에 대한 생활터전 상실 등을 감안하여 복구계획수립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의판단 조치하여야 할 사항임.

질 의

집중호우로 주택반파 피해를 입어 복구비를 지원받아 어머니가 집수리를 하였는데, 피해를 입은 집이 공동지분으로 어머니 지분이 50%(3/6)여서 소유주를 어머니로 한다는 세무서의 답변을 들었으나, 시청에서는 나머지 지분의 50%의 공동지분자가 3사람으로 1/6씩 되어있으니 1/6상속지분 가진 가족들이 1가구 2주택이라 하면서 복구비를 반환하라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답 변

○ 50%의 지분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 피해를 입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판단되나

○ 1가구 2주택의 공동지분 소유에 따른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여부와 공동지분의 지분율, 타주택 소유지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권자인 해당 시군에서 지원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 의

7월 집중호우로 시어머님 주택이 떠내려가 정부에서 주택복구비를 지원받았는데 1가구 2주택자라고 하면서 반환하라고 함. 남편은 회사원으로써 저와 애들과 함께 시어머님댁에서 4km정도 떨어진곳에 살고 있는데 같은 생활권이라 주민등록은 시어머님과 함께 올라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지원받았던 재난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답 변

○ 1가구 2주택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복구비 지원대상은 아니나, 주민등록주소지가 같게 되어 있더라도 주택의 공부상 소유자가 각기 되어 있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복구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 의

○ 집중호우로 3층 다가구주택(1층은 점포, 2층은 주택 2, 3층은 주택 1)의 3층 지붕이 파손된 경우,

1. 다가구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 다가구주택은 성격성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2,3층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피해정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층 주택만을 보아 산정을 하는지? 또는 본인 소유의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로 보아 각각의 주택을 따로 따로 보아 하나의 주택단위로 피해정도를 산정하여 1개만 지원할 수 있는지?
3. 1가구 2주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부동산 규제 등에 관련된 서울·경기·광역시지역의 소유가격 등과 관련된 기준인지, 아니면 가족구성원(등본기준? 호적기준?)이 단순히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인지)

답 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의미는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과 세대주가 주택을 2채이상 소유한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층별 또는 구획별로 주택소유자의 각각의 소유로 분리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1가구 2주택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동 건축물을 직접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질 의

○ 1층은 상가, 2층은 2가구 주택 40평(각 20평씩), 3층은 1가구 주택 30평인 건물의 3층주택이 강풍피해를 입은 경우

1. 다가구주택일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 상기 건물이 1주택일 경우, 3층 1가구 파손정도를 조사하여 반파 또는 전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또는 2,3층 3가구를 한덩어리로 피해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답 변

○ 질의 1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층별 또는 구획별로 주택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분리되어 등기여부에 따라 1가구 2주택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 질의 2에 대하여는 동 건물이 1주택의 직접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건물이면 1가구에 대한 피해조사는 건물전체를 기준으로 전·반파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내용만으로는 현지 정황 등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의 여러 가지 현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3-1-4 : 무허가 주택

질 의

무허가 주택이 침수된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응급구호비 지급 대상인지?

답 변

○ 주택 침수피해의 경우, 허가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으로 재난지수 600이며, 주택침수 단일피해인 경우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의거 1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함.

○ 또한,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으면 응급구호비로 1인 1일 5천원을 7일간 계상하여 지원하면 됨.

질 의

○ 무허가주택 1동(세입자 3명거주)이 침수된 경우, 적법하게 복구하였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응급구호금은 5,000원×3명×7일 = 105,000원 지급하는지?

답 변

○ 침수주택에 대하여도 주택피해와 동일하게 지원하며 단일피해만 입었을 경우 재난지수가 600으로 조견표상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급구호비는 1인 1일 5천원을 계상 지급하면 됨.

질 의

하천상류에 위치한 댐에서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국가하천 구역내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답 변

○ 주택은 전·반파 및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허가(적법) 유무에 관계없이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 동 건에 대하여는 주택이 하천구역내(고수부지) 위치한 경우로써 상습반복적인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제7호의 경우처럼 하천의 유수통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건은 유수통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므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를 정밀조사하여 여러정황을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 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중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제6조제4호)에서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어 전파나 반파에 해당된다면 재난지원금 선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련절차에 의해 건축신고·허가 등을 득하여 필증 등을 제출해야만 지급이 가능한지?

답 변

○ 무허가 주택피해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선지급대상이 아님.

질 의

○ 무허가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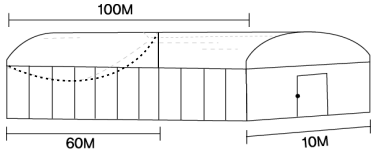
1. 전·반파인 경우, 무허가 주택도 적법하게 복구한다면 복구비 지원이 가능한지?
2. 적법하게 복구해야만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신축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피해입은 부분만 복구를 해도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1. 주택 전·반파에 대하여는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있는바 와 같이 허가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토록 하고 있음.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에 한함.
2. 무허가 주택이 전파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개별법에 의거 주택을 신축하여야 할 것이며, 반파의 경우는 파손부분의 수리 및 보수하는 것으로 복구하면 됨.

3-2 : 농림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비닐하우스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단순 비닐파열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 피해면적은 전파·반파 구분 조사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구분 조사하되 철재파이프 하우스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 되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예시]  – 피해면적=60m × 10m = 600㎡ ※ 주의)100m×10m = 1,000㎡ 아님 – 피해구분은 비닐하우스 전체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부분 면적을 기준하며 아래와 같이 전파 및 반파로 구분조사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단가	● 철재파이프하우스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달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 의거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재난지수 산정방법 – 피해면적(㎡)×시설별 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 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 피해 복구대상면적 적용시 1개동의 일부분만 피해를 입은 경우 1개동 전체면적을 복구대상 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인삼재배시설	● 유실·매몰·전파·반파로 구분하고 실제 피해면적을 조사 ● 표준설계규격에 맞지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형태별의 A형(6년근), B형(4년근)으로 구분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단가 (반파의 경우 1/2적용) – 피해면적 : 재배시설 길이(면적) 100m중 10m가 파괴되었을 경우 피해면적은 10m부분 면적만 적용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고시」의거 내재해형 규격시설 및 내재해형 규격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복구시 지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 시설유형별 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 당해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버섯재배사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조사 – 시설의 종류 : 병버섯재배사, 판넬재배사, 하우스형 간이재배사로 구분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단가 (반파는 1/2 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 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 당해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과수재배시설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준영구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 시설의 종류 :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 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 당해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과수재배시설	– 피해정도 구분기준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농산물저장시설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 :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기둥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 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 × 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 당해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 시설지원기준지수 ・저장시설(일반) : 105/㎡ ・저장시설(저온) : 280/㎡ ・농기계보관창고 (마을공동보관창고) : 62/㎡

3-2-1 : 비닐하우스

질 의

비닐하우스 1동(길이 100m, 폭 8m)중 60m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물량은 피해면적 60m×8m=480㎡로 입력해야 하는데,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전체면적이 아닌 피해면적을 기준한다고 되어 있던데..... 피해면적(480㎡)중 유실·파손비율을 따져 전파·반파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전체면적(800㎡) 비율을 따져 전파·반파로 구분해야 하는지?

답 변

○ 비닐하우스 피해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전파는 시설의 70%이상이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반파는 시설의 35~70%미만이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임.

질 의

3월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1동이 완파, 1동이 반파되었으나 집에서 관리하기가 좋은(가까운)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은?

답 변

○ 정부에서는 피해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06년부터 복구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피해 비닐하우스를 이동하여 복구하여도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질 의

시설하우스내 자동화관련기계에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지?

답 변

○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지원 기본방침은 생산물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기초시설(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기자재, 상품 등의 동산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질 의

강풍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가 하천환경정비지구로 고시된 하천부지내에 있는 경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국고지원 대상인지?

답 변

○ 피해지역이 하천환경정비지구로 고시되었으나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의뢰가 없었고 보상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일정기간의 경작이 가능할 것이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현지상황이 변경되어 보상계획 등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었거나 보상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등이 민원인에 통지되는 등 사회통념상 가까운 시기에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를 재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여야 할 것임.

3-2-2 : 인삼재배시설

질 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인삼밭피해에 대해 인삼재배시설 규격미달이라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답 변

○ 폭설피해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인삼재배시설의 표준설계규격 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임.

○ 다만,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는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3-2-3 : 농산물 저장시설

질 의

농림시설중 유리온실이 피해를 입어 온실의 유리가 파손되었다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비닐하우스의 단순비닐 파손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것처럼 유리온실의 유리만 파손되었다면 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님

질 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농산물저장시설 및 농기계보관창고에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은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님

질 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창고로 되어있으나 실제 이용은 농산물 저장시설과 농기계 보관창고로 이용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답 변

○ 농산물 저장시설은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황을 확인하여 일치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공동창고만 해당되는 것으로써 지원 대상이 아님.

질 의

농협창고 및 정부양곡보관창고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답 변

○ 농협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창고라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창고시설 자체의 등기상 소유가 국가관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유일 경우 해당하는 것임.

질 의

농산물저장창고 임대인은 농업인이 아니고, 임차인은 농업인인데 복구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복구지원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답 변

○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비 및 지방비 등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으로 인한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 수입의 50% 이상에 달하는 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산손실 일부 보전 등을 위한 것임.

○ 농업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시설물 소유자가 지원대상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농업인이라 해도 임차시설 붕괴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손실은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다 판단됨.

3-3 : 해양수산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수산증양식시설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하고 시설물 유실로 현장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협, 조합, 어촌계, 내수면 관련 협회,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허가·면허·신고대장을 확인(종류, 기간, 어장위치, 면적 등)하고 유실된 모든 시설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1ha당 표준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증·양식 시설별 • 어업권자와 피해어민의 일치여부 확인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참조하여 자세히 조사하되, 무면허·무허가(신고) 및 양식어업별 시설기준을 초과 또는 관련 시설이 비치되지 않은 양식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어장의 행사자 수와 개인별 행사면적 확인 • 피해액 산정 – 종류별로 피해단가 적용(가두리 시설의 반파는 1/2적용, 타시설은 단위별로 환산적용)하고 행사자별로 피해물량을 산정 – 반파기준은 어망·어구와 같음.	• 복구비 : 피해액과 같음 • 수산증양식시설은 복구전에 재질, 규격 등에 대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확정·지원된 복구비 이상으로 양질의 내파성 재질로 감수(減數)복구가 가능함 – 다만, 확정 복구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함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수산생물 등 입식	● 수산증·양식시설 면허대장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 확인 – 입식 판매량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고가능 ● 유실인 경우 종묘살포계획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피해물량은 시설기준별 표준사육(입식)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 확인 ※ 미신고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치 ● 피해생물의 종류별, 크기별(성어, 중간어, 치어)로 구분 조사	● 재난지수 산정 – 생물종류별 지원기준지수×피해수량 ● 지원기준지수 – 패류, 해조류, 기타류 :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 어류 : 치어 지원기준지수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의 1/2크기의 어류가격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어장의 환경변화로 피해재발 소지가 있거나 계절적, 수온, 어종품귀, 기타의 사유로 피해어종의 입식이 불가할 때에는 복구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른 어종으로 대체입식 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해면양식의 성어” 라 함은 표준사육기준표상의 크기의 성어를 말하며, 지원단가 산정시 성어는 성어의1/2값을, 중간어·치어는 치어값을 적용함

질 의

○ 동해안에 위치한 자치단체로써 태풍 내습으로 육상의 황토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연안에서 수하식 양식중이던 가리비 등의 수산생물이 폐사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어업인으로부터 피해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자연재난에 해당되는지?

– 참고로, 동해안에서는 고속국도 공사가 진행중으로 임야에 임목제거 등 산림훼손후 절토공사가 진행중으로 상당량의 토사가 빗물에 씻겨 바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과거에도 비가오면 대량의 황토물이 바다로 유입되었으나 연안에서 양식중인 수산생물에 대하여는 피해 및 지원사례가 없었음.

답 변

○ 바다는 강우와 관계없이 평시에도 이물질 등이 수시로 강과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금회 강우로 인한 황토물 유입으로 수산생물이 폐사하였다고 명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며

○ 또한, 바다는 모든 물의(이물질 등을 포함) 귀착지로써 연안의 수산생물양식장은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일정부분 수용(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본 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 여부 등을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및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질 의

수산분야는 선지원 50%후 복구완료후에 후지원 50%를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선지원후 복구완료 하였을 당시 실제 복구에 사용된 금액이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선지원+후지원)보다 작다면 후지원시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 변

○ 대부분의 경우 시설복구비는 지원단가 대비 지원율이 35% 수준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피해신고 수량이 과장되었거나 피해조사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졌는지를 우선 재확인 하시기 바라며

○ 해양수산분야 시설복구비 등에 대하여는 선지급후 나머지 후지급분에 대한 관리를 해양수산분야 소관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분야 소관과 발간 지침이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 의

해양수산분야 시설복구비는 선지급금 50%만 정산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야 하는지? 농림시설은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양수산분야를 정산해야 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답 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은 50%로 하며, 나머지 재난지원금은 복구완료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 정산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비율 및 지급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가 필요함.

질 의

어망·어구 자연재난 피해복구시 매매, 경매,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또한, 피해발생전 구입하였던 어망·어구로 복구할 수 있는지?

답 변

○ 피해복구중 또는 선복구 완료후 피해시설의 어업권자가 변경된 경우 개인(사인)간 복구비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승계절차를 이행하였고, 변경된 소유권자가 복구비 지원대상에 적합하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 피해발생전 구입한 어망·어구가 신품이며 개별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등에 적합하다면 재난지원금의 선지급 취지에 따라 피해복구로 간주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상기 질의건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을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내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적의처리하시기 바람.

질 의

어선, 어망·어구, 수산증양식 등 해양수산분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시 실제 소요된 복구비용만 정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제 복구금액이 미달되더라도 복구완료시 재난지원금 전액을 지원하여야 하는지?

답 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은 50%로 하며, 나머지 재난지원금은 해당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후 지급토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비율 및 지급절차』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으므로

○ 복구확정액 대비 실제 복구비용이 적게 소요되었을 경우 정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급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람.

질 의

육상선착장 또는 어구보관 장소에서 보관중이던 자망어구가 유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변

○ 어망·어구는 바다에 어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육상에 보관중이던 어망·어구 유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질 의

태풍으로 해삼육상양식(’05년부터 육상양식허가) 피해를 입었으나 고시단가가 없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답 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의거 소관부처의 장(수산생물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은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제4장 농경지 · 농작물피해 지원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농경지	●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토양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 중 – 지구당(피해면적이 육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연속성을 갖는 피해지역) 5,000㎡이상 이거나 – 1농가당 165㎡(매몰심도 10㎝이상) 이상인 경우 지원 ● 현지를 답사 필지별로 조사하되 매몰과 유실로 구분조사 ● 매몰면적 : 매몰심도 10㎝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유실면적 : 유실깊이 10㎝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농경지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는 매입대상으로 조사	● 유실·매몰 피해면적에 지원기준지수 매몰은 0.5 유실은 1.24 적용 ● 농경지의 경우 대규모 피해지역은 가능한 소규모 경지정리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경지정리지구로 책정 병행 시행 – 재난지수 산정 : ㎡면적으로 계산함 · 매몰 : 매몰면적(㎡)×0.5 (지원기준지수) · 유실 : 유실면적(㎡)×1.24 (지원기준지수)
농작물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음. ● 피해조사시 가족 및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농작물은 피해특성상 피해조사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피해 발생시 우선잠정 보고하고,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확정전까지 조사 완료하되 부득이 누락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수립전까지 보고 ※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조치 하여야 함.	① 대파대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벼, 채소작물등 일반작물 : 무, 배추기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비닐하우스등 시설작물 : 과채류, 엽채류 구분 지원기준지수 적용 ● 인삼 : 묘삼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과수 : 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화훼 :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버섯 : 종균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농작물		② 농약대 ● 농작물의 침·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기준지수 – 일반작물 : ha당 99.88 – 채 소 류 : ha당 222.59 – 과 수 류 : ha당 469.50 – 인 삼 : ha당 161.24

질 의

○ 개인농지에 대하여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사성토 및 배수시설(플륨관) 완료후 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득한 후 농지로써의 경작이 이루어지던중

–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훼손(토사유실) 및 배수시설(플륨관) 등이 피해를 입어 관할 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지복구비 지원 및 배수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농지복구 지원금에 대하여만 일부 지원이 가능하나 개인이 조성한 농경지 시설물(배수시설)에 대하여는 공공시설물이 아닌 사유토지에 대한 개인시설물(배수시설)인 만큼 복구비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지?

답 변

○ 농경지 유실·매몰피해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이 설치한 배수시설 등의 시설물 피해는 소유자가 복구하여야 함.

질 의

야생동물(멧돼지)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적용범위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님.

질 의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농작물을 재배하다 홍수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농작물을 재배하다 홍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님

질 의

한 곳에 산사태로 인하여 농경지 매몰과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 각각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대파대, 농약대 등 각각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 변

○ 농경지 유실매몰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두가지 모두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농작물 피해발생 정도에 따라 대파대나 농약대를 지원하여야 함.

질 의

농경지 위에 농작물 파종 후, 농경지가 유실되면서 파종한 농작물까지 함께 유실되었는데 군청에서는 농경지유실에만 해당되어 농경지 유실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답 변

○ 농경지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대상은 1농가당 165㎡이상의 면적이 유실·매몰된 경우 농경지 복구지원 농작물이 있을 때에는 농약대나 대파대를 지원하고 있음.

질 의

국유지에 경작을 하던 농민이 농작물 피해(물론, 재난지수 300이상이고 주생계수단임)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 국유지에 농작물 경작중 피해를 입었다면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임.

질 의

부모님과는 같이 살지 않지만(독립된 세대 구성) 주민등록을 같이 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인 경우, 부모님이 농경지 피해를 입었다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등의 주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각각이 독립된 주거와 생계를 하고 있다면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종류, 지원범위 및 대상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질 의

마(산약)의 피해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과채류 일반작물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방안은?

답 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지원 기본방침은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유실·매몰 및 침수로 대파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쓰러진 농작물의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약대를 지원토록 하고 있음.

추가답변

○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피해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보상적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이재민과 농·어업분야만 한정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가축이나 생물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액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새끼 가축이나 종묘·묘목대와 대파할 수 있는 종자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질 의

약초, 약용작물 등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지?

답 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항목 및 대상 등에 대하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 지원대상은 소관부처(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에서 고시한 단가에 의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처에서 고시한 단가가 없으면 지원이 되지 않음.

질 의

농경지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누구인지와 실경작의 범위는?

답 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해를 입은 시설물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복구계획을 수립 지원하여야 할 것임(소유자 부재 및 위임 위탁 받은 경우 등).

○ 소유자나 임차인 중 농작물을 실제로 파종하고 관리하는 자를 실경작자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상기 질의건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할 것임.

질 의

양파 묘판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 변

○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정도에 따라 농약대나 대파대를 일반작물(무, 배추 기준)이나 시설채소(엽채류, 과채류)로 분류하여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음.

제5장 기타 피해 지원

5-1 : 선 박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어선 파손·유실	• 조사대상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전파 및 반파된 어선중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한 어선 – 1톤미만의 무동력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신고를 필하였거나 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 미등록 어선 및 원양어선, 외국선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어선은 제외 • 어선피해를 입은자가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반파어선을 새로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음.

질 의

강풍·풍랑으로 인해 선박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다른법령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각종공제 등)에는 국고지원이 제외됨.

질 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선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비, 장제비, 행방불명 급여비 등을 지원받았다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제5호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 특히,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정부에서 보험금의 대부분을 보조하고 있으므로 재해복구비(재난지원금)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복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타분야와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질 의

피항 정박중에 화재가 발생한 어선에 대하여 자연재난으로 보아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답 변

○ 피해어선이 어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 제5호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거 복구비가 지원되는 경우로 국고지원대상이 아니며, 복구비를 지원하더라도 보험금 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같은 경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의 동일한 재난기간 내에 발생한 피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화재의 발생원인 또한 불명확하고, 태풍에 의한 강우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 화재발생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할 때 자연재난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함.

5-2 : 조경수

질 의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나무가(주목. 묘목 심은후 3년 됐음) 토사로 인하여 유실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토사유입된 평당단가로 받는건지? 아니면, 나무 그루당 받는건지?

답 변

○ 조경수 피해에 대하여는 면적당 묘목대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별 전체 재난지수의 합계가 300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시군구와 협의가 필요함.

5-3 : 낙 뢰

질 의

관내 주민이 호우주의보 발표 20분전 해상조업(어망작업)중 낙뢰를 맞은 경우, 자연재난으로 간주하여 복구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 낙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태풍, 홍수, 호우 등의 기상특보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여는 복구계획을 수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서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중 기상특보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에 의한 피해도 복구계획을 수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郡에서 복구비 지원여부에 대하여 적의판단 조치하시기 바람.

질 의

국지성호우와 낙뢰로 섬에 위치해 있는 축사가 반파되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중 기상특보 현상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피해에 대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국지적인 소규모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규정에 의한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나, 동 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 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공전에 입주하여 주거하던중 낙뢰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전소된 경우,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사유재산중 주택피해에 대하여는 무허가 불법건축물도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정황을 조사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질 의

낙뢰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었는데, 낙뢰처럼 국지적으로 생긴 재난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지?

답 변

○ 자연재난의 적용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의거 기상특보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경우로써

○ 낙뢰는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나 국지적 소규모피해는 국고지원대상은 아니므로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구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낙뢰피해 지원사례

○ 피해일시 : '08. 7.30
○ 피해장소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20번지
○ 피해원인 : 낙뢰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주택 1동 전소
○ 처리결과 : 평창군수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복구비 지원

제6장 국고지원 제외대상

법적근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

6-1 : 공사중 피해 등

공사중의 범위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을 말함

| 예 시 |

- 도　　로 : 도로 포장계획이 수립된 지구에서 도로포장이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 (토공부분이 준공되어도 공사중으로 봄)
- 교　　량 : 상부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
- 택지개발 : 택지개발 사업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
- 저 수 지 : 제당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
- 기　　타 : 시설물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

※ 공작물 기타 시설물 : 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함.

질 의

'04년부터 '06년까지 관청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로써 '04년과 '05년분을 준공처리하고 '06년분을 시행하던중 태풍피해를 입었는데 (도로시설물중 보조기층만 포설된 상태)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변

○ 공사중인 현장에 대하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제1호에 의거 국고지원대상이 아님.

질 의

○ 선착장 시공공사를 '06.11.23일 기성검사 69.3%를 득하고 공정률 90% 추진중 '07. 3월 강풍·풍랑으로 피복석 및 속채움 사석이 유실되었으나, 규정에 의거 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함.

질 의

시설공사 피해발생전 90%이상 공정률로 선착장 시설물이 현실적으로 어선 접안 등 주민생활편익 시설로써 사업의 목적에 접합토록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과 현지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과 부합된 점이 있는데 사업비 집행이 타당한지?

답 변

○ 공사중인 현장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국고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제1호에 의거 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 본 건에 대하여는 발주청(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임.

질 의

시비와 구비 지원으로 만든 비닐하우스가 강풍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데, 비닐하우스는 준공검사를 하진 않았지만 본래 목적의 기능을 발휘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국고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질 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에 의거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복구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비로는 지급이 가능한지?

답 변

○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공사중인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한 지방비 지원여부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지여건 등 정황을 종합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의판단조치 하여야 할 것임.

질 의

8월 폭우로 동백, 허브 등이 물에 잠겼는데, 5월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함. 농약값이라도 지원받을 수 없는지?

답 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제2호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님

※ 제6조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질 의

태풍으로 인하여 육상전복양식장 피해를 입었으나 連島橋(섬과 섬을 이은 다리) 사업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변

○ 자연재난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지원 기본방침은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부의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질 의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지구내에서 발생한 주택피해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답 변

○ 동 질의에 대하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귀 시에서 사업시행 착수 및 보상금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의판단 조치하시기 바람.

질 의

침수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주택이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된 경우 주택 전파복구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동 주택은 침수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기 지급받아 복구한 상태로써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이므로 주택 전파복구 지원대상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질 의

도로사업이 확정되고 보상계획이 통보된 후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 복구비 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 도로사업이 확정되고 보상계획이 통보된 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국고 지원대상이 아님.

질 의

준공된지 불과 1개월된 하천 및 도로가 호우로 유실된 경우, 하자로 복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난으로 판단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해야 하는지?

답 변

○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피해발생시 하자유무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시설별 하자기간도 다르며, 설계빈도 및 강도 등이 규정된 설계서에 의거 발주청에서 하자유무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6-2 : 지방관리 공공건물 피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구 분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지방관리 공공건물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 유 · 미가입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임. ·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 등 부대시설은 조사	●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등 부대시설은 지원

지방관리공공건물 복구비 중복지급 사례('07.1월 감사원 감사)

○ '06.7.9~7.29 기간중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00군 00국악당은 00군이 관리하는 지방관리공공시설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공제회에서 복구비 등 지원)되어 있어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중복지원

질 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건물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도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설물을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사유시설의 복구나 불가피한 공공시설의 복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예비비 등을 통하여 일부 지원하고 있는 바, 이는 가능한 시설주체가 보험이나 공제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국가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임.

○ 참고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의 사유시설에 대하여도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6-3 : 중소기업(공장 등) 피해

질 의

외국인 기업(공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답 변

○ 기업(공장)피해에 대하여는 외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내국인 피해에 대하여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질 의

태풍으로 인해 옥외광고물 LED전광판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가 지원되는지?

답 변

○ 옥외광고물 LED전광판 등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재난지원금(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나, 중소기업청에서 재해중소기업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6-4 : 동산 피해

질 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보일러, 송풍기, 기자재, 농기계 등이 파손된 경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지?

답 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지원 기본방침은 사회구호차원에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농림작물 및 농림시설 피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보일러, 송풍기, 기자재, 농기계 등 동산피해에 대하여는 수많은 기자재 상품들에 대한 종류와 가격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산물을 유발하는 직접적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는 정부의 복구비 지원원칙에도 맞지 않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지원하고 있지 않음.

질 의

집중호우로 인해 병원지하가 침수되어 주차중이던 자동차 및 수도시설, 전기시설, 보일러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지?

답 변

○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바닥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하여 복구비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 자동차 및 가전제품 · 물건 등의 동산피해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님.

질 의

태풍 내습시 침수피해를 입은 연탄과 목욕탕 전자제품 · 살림도구 · 옷 등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하여 주택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으므로

○ 가전제품 · 가재도구 · 물건 등의 동산피해는 지원대상이 아님.

6-5 : 가로수에 의한 동산(자동차) 피해

질 의

강풍에 부러진 가로수 한그루가 쓰러져 지나가던 자동차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지?

답 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

○ 다만, 가로수 전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로수 관리자(청, 기관)에게 가로수 관리에 대한 하자를 물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상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임.

질 의

강풍으로 가로수가 전도되어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다면 처리방법은?

답 변

○ 자동차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 민원인은 가로수 관리자(청, 기관)에게 가로수 관리에 대한 하자를 물어 피해보상을 통하여 직접 청구하거나,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파손 등의 보상보험료를 수령후 보험회사가 가로수 관리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됨.

○ 따라서, 가로수 관리자(청)는 민법상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받아야 할 사안임.

6-6 : 종교시설 등 피해

질 의

종교시설 및 주택 부속시설 복구비 지원가능 여부는?

답 변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 및 교회 사택 등은 종교시설로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니며

○ 또한, 일반주택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중인 건물에 한하여 지원하며, 화장실 등의 부속건물은 지원대상이 아님.

질 의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찰이 사찰주변 산사태 발생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정부의 재난복구 지원대상이 되는지?

답 변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이 전·반파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복구비 지원대상이나, 개인사찰 등의 종교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님.

제7장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령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피해사실확인서(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번호 : 제 호

피해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 해 내 역

대 상	단 위	피해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일시	재해의 종류

용 도	
제출처	

위와 같이 상기인이 소유(경작)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읍·면장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본 증명은 발급일부터 3월간 유효함

210×297㎜(보존용지(2종) 70g/㎡)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서식)

[별지 제17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피해자			피해내역			용도	제출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피해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210×297㎜(보존용지(2종) 70g/㎡)

질 의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코자 하는데, 피해재산을 조사하는 해당부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발급해야 하는지?

답 변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하는지는 내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나, 시설별 피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소관과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 의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는 피해당사자 또는 피해당사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자녀에게 발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당사자의 친척(사위, 조카 등)에게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발급대상자 범위는?

답 변

○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에 따라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누구에게든 발급 가능함.

질 의

태풍 등 침수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피해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피해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발급이 가능한지?

답 변

○ 피해사실확인서는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와 피해수량 등을 현지조사 및 입증서류를 통해 확인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발급할 수 있음. 따라서, 피해주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피해신고서 제출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민원인은 어떠한 피해든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요청할 수 있음.

질 의

○ 사진 등 여러 정황상 피해를 입은 것이지만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오는 분들중에는 택지개발로 당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을 상향조정하여 준다고 하여 근간의 피해가 아닌 10년전 피해에 대하여도 발급을 받고자 하는데, 발급이 가능한지?

답 변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상 및 범위는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대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한 모든시설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한 것이며

○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시에는 피해현장과 공부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피해발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음.

질 의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으나, 발급대상(범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구체적으로 토지의 경우 전이나 답이 아니여도 지목이 유지나 대지, 임야의 경우에도 수해피해(토지의 유실)의 발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답 변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상 및 범위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모든 시설이 발급대상이며, 복구비 지원대상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질 의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16호서식) 발급 기준이 피해신고서 접수한 사람 모두인지, 아니면 재난지수 300이상인 사람에게만 한정되는지?

답 변

○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상 및 범위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모든 시설이 발급대상이므로 복구비 지원대상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발급시에는 피해가 확인가능한 것에 대하여 피해발생 사실 그대로를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음.

제8장 채권압류 금지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제66조 (국고보조 등) ①국가는 재난관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농림어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질 의

재난지원금은 채권압류할 수 없는지? 근거는?

답 변

○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압류의 금지) 규정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설복구에 필요한 복구비가 압류됨으로써 수해복구 추진이 늦어지거나 복구를 포기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 24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6조 규정에 의거 국고 보조된 구호금품(수해복구비)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질 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유시설피해 복구비를 압류당하게 되었는데, 해결방법은?

답 변

○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압류의 금지) 규정은 금융기관 등의 수해복구비 채권 압류로 복구추진이 늦어지거나 복구를 포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급된 구호금품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압류당한 경우에는 특별한 해결방안 제시가 어려움.

질 의

피해복구비 지급대상자가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하여 상속권자가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복구비 지급 방법은?

답 변

○ 국가로부터 복구비를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국가는 복구비를 지급할 의무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람.

제9장 기 타

질 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서 "가족"의 정의는?

답 변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을 말함.

※ 세대주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세대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자

질 의

신용불량자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타인통장(가족 또는 주변인)으로 지급가능한지?

답 변

○ 재난지원금 지급시 신용불량자가 통장이 없어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가친척 및 친족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전신환 지급 등의 방법 등을 모색하여 조치하면 됨.

질 의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소관부서 확인 및 전담부서 통보 방법은?

답 변

○ 자치단체별 조직운영 및 행정처리 방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단계별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음.

① 피해 접수와 피해상황 전산 입력 관리는 방재부서에서 전담

② 방재부서에서 피해시설별로 소관부서에 통보하면 소관부서에서 현지에 출장 피해 사실을 확인한후 확인 결과를 방재부서에 통보

③ 방재부서에서 조사 결과를 전산에 수정입력한 후 입력 리스트를 소관부서에 통보 수정사항을 최종 검토 요청
④ 소관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인후 방재부서에 통보(피해 사실 유무책임은 소관부서임)
⑤ 통보받은 방재부서에서는 개인별 지급액을 회계부서에 통보
⑥ 회계부서에서는 개인별 재난지원금을 입금계좌에 입금

질 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작은섬인데 피해조사만 하고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 작은섬이라 차별하여 지원하지 않는건지?

답 변

○ 복구비 지원에 대하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제2항 별표1에 의거 지역적 차별없이 전국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질 의

사유재산피해 신고접수 요령 및 재난지원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 변

○ 피해주민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우선 접수하고 사유재산피해 지원 전산시스템(NDMS)에 입력한후, 입력내용을 토대로 현지조사 확인하여 수량을 확정하면 개인별 재난지원금이 자동산정됨.

질 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에서 발행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책자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디서 구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포하는지?

답 변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은 비매품으로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에서 관공서 등에 배포하는 자료이며,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종합자료실≫법령자료≫ 훈령예규)에서 해당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질 의

일반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군청 등 행정기관에서 구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타법률에 의거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답 변

○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 일반주택에 대한 화재피해는 인적재난으로써 소유자가 평상시 화재보험 등을 통하여 구제받아야 함.

질 의

국고보조받아 건축된 사유시설물(예 : 표고재배시설지원 국고 보조사업)도 피해복구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보조사업으로 설치하였던 사유시설물 피해에 대하여도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질 의

경매일 전에 경매물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 지원하여야 하는지?

답 변

○ 경매 물건은 주인이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피해발생 이후 경매일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경매를 해제(해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래의 소유자는 복구비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낙찰자는 시설물 피해로 인하여 생계곤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닌것은 물론 전 소유주로부터 복구비를 지원받을 권리 등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 의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본부장이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피해의 정의는?

답 변

○ 광역시도간의 시·군·구 및 광역시도내의 시·군·구간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 모두를 말함.

질 의

밭 아래 집 한채가 있는데 호우로 인해 밭과 집의 경계면(집과 밭의 높이 약 6m)이 무너져 아래에 있는 집의 차양과 기물이 파손된 경우, 수해에 해당하는지(구청에서는 밭이 있으면 무조건 수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음)? 만약, 수해가 아니라면 위에 밭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전부의 책임이 있는건지?

답 변

○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실정이나 재난에 대한 정의 등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민법 등에서 답변되어질 사항으로써 붕괴장소의 소유가 누구인지에 따라 복구책임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상부쪽의 토지 소유주가 복구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 의

농업용지 뚝방 붕괴로 인한 주택 주변 토사유입시 토사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官(시·군·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답 변

○ 뚝방이 농업용 공공시설이면 官(시·군·구)에서 공공시설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유시설인 경우에는 주변 농경지와의 연접 등의 상황에 따라 사유재산으로써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질 의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8호)한 사유는?

답 변

○ 재난지원금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피해조사, 복구계획수립, 복구비 지원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신고, 현장 확인 동행, 행정기관 방문 등을 감안할 때 별 실익이 없으며

○ 또한, 사유재산피해는 소유자 자신이 복구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써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로 생계가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본인이 복구하여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질 의

급여가 없는 학교 이사장이며 농업을 영위하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시설물 피해자에 대해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 지급 기본방침은 생계구호차원에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부양자와의 동거 여부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가인지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귀 郡에서 적의 조치하시기 바람.

질 의

○ 강풍으로 인하여 지붕일부가 파손되면서 날아간 파편이
  – 다른 주택 또는 축사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간접피해) 자연재해에 속하는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지?
  – 인명피해(사망, 부상)를 입혔을 때는 어떠한지?

답 변

○ 간접피해의 경우 획일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자연물 또는 인공물에 의한 간접피해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간접피해물에 대하여는 외형상 동일한 조건이라도 피해 유발물의 상태(관리자의 관리소홀 유무, 노후상태 등)와 주변현황 및 정황 등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많으니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인명피해에 대하여도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동기 등의 여러정황은 물론 피해유발물의 상태 등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적의 판단조치 하여야 할 것임.

질 의

많은 비가 내려 집 옆쪽 축대가 무너지면서 보일러실이 같이 무너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접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이 전·반파 피해를 입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나, 축대·보일러실 등 부속물은 지원대상이 아님.

질 의

산사태로 농경지가 유실·매몰되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재난지원금으론 농경지의 복구가 불가능하고 이후 수해재발이 우려되어 토지매입을 건의할 경우 (사업에 반영) 재난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지?

답 변

○ 농경지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하기 때문에 사후정산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당해 수해복구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기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구와 협의가 필요함.

Ⅳ. 별 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Ⅳ. 별 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6. 6. 21 제정 대통령령제15032호
1998. 9. 26 개정 대통령령제15900호
1999. 8. 19 개정 대통령령제16537호
2000. 7. 1 개정 대통령령제16880호
2001. 2. 3 개정 대통령령제17125호
2001. 4. 18 개정 대통령령제17197호
2003. 7. 30 개정 대통령령제18076호
2004. 7. 24개정 대통령령제18480호
2005. 11. 30개정 대통령령제19144호
2007. 9. 14개정 대통령령제2026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된 자나 부상자와 주택을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라 함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라 함은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과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영어·영림·양축(養畜)·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다.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①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 항에서 "보통세등연평균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14억원
2.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0억원
3.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6억원

4.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32억원
5.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 38억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군·구에 대하여 당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가목 내지 바목과 동항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6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

제7조(국고의 추가지원)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동표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동항 제2호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외에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난복구비용의 산정 등) ①재난복구비용(별표 1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기준은 기능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등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②중앙본부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에 대하여는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광산·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이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지원 등) ①별표 1에서 정한 융자지원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융자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 법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조견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을 각각 적용한다.

제2조(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식·출하 또는 판매하는 양식품종 또는 종묘분부터 적용한다.

| 별 표 1 |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사망 · 실종 · 부상자 구호			
(1) 구호금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신체장애 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사망 · 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半破) 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최초 7일간 구호를 원칙으로 한다.
(2) 장기구호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주택이 전파(全破) 또는 유실된 자에 대하여는 2개월간, 반파된 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구호를 한다.
(3) 생계지원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 지원 100퍼센트	• 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부양곡 방출가격(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4)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 면제	• 6월분	• 지원 100퍼센트	•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비 고

가. 나목의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의 대상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 · 어구, 수산물 증식 · 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한 총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 어가 · 임가 또는 염생산가에 한정한다.

나. "주택의 반파"란 기둥 · 벽체 ·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주택의 전파"란 기둥 · 벽체 ·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유실	●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0퍼센트 ● 융자(국민주택기금) 60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 주택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파손·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2.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개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재해위험지구와 「건축법」 제54조에 따른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파주택의 융자비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6. 주택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8.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2) 주택침수	●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3) 세입자 보조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4) 마을기반 조성	● 기반조성 공사비	● 국고 50퍼센트 ● 지방비 50퍼센트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1) 농경지 유실 · 매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60퍼센트 • 융자 30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 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나 해수의 침수로 염해를 입은 때에는 피해지구의 1지구당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농가당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 · 매몰은 평균 심도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	• 매입가격	• 국고 50퍼센트 • 지방비 50퍼센트	•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 농림시설 ·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 · 유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5퍼센트 • 융자 55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 농림시설은 농업(원예 · 인삼 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① 대파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50퍼센트 • 융자 30퍼센트 • 자부담 20퍼센트	• 농경지의 유실 · 매몰 · 침수 또는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 인삼 · 화훼 · 과수 · 조경수 · 분재 · 야생화 · 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 · 매몰 · 침수피해 시에 한하여 각각 묘삼대 · 종묘대 · 묘목대 또는 종균대를 지원한다.
② 농약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농작물의 침 · 관수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과수낙과 또는 가뭄피해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라. 축산물 증식 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 · 유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5퍼센트 ● 융자 55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2) 초지유실 · 매몰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융자 70퍼센트 ● 자부담 30퍼센트	
(3) 잠실파손 · 유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5퍼센트 ● 융자 55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4) 가축입식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50퍼센트 ● 융자 30퍼센트 ● 자부담 20퍼센트	● 가축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유실 · 폐사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50퍼센트 ● 융자 30퍼센트 ● 자부담 20퍼센트	
마. 어선과 어망 · 어구의 복구			
(1) 40톤 미만 어선의 파손 · 유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5퍼센트 ● 융자 55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 보험가입 어선은 제외한다.
(2) 40톤 이상 어선의 파손 · 유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융자 70퍼센트 ● 자부담 30퍼센트	
(3) 6천만원 미만 어망 · 어구의 파손 · 유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5퍼센트 ● 융자 55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 어망 · 어구의 지원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4) 6천만원 이상 어망 · 어구의 파손 · 유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융자 70퍼센트 ● 자부담 30퍼센트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바.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파손·유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5퍼센트 ● 융자 55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50퍼센트 ● 융자 30퍼센트 ● 자부담 20퍼센트	● 수산생물의 입식비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稚魚)의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확정한 성어(成魚)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사. 공공시설의 복구			
(1) 국가관리시설(국도, 철도, 국가하천, 방조제, 지정항 및 공업항, 항공시설, 국가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무선국시설, 국립학교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재, 국립양식장, 국가관리광역상수도시설, 국가관리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전파관리시설 및 연구시설, 국유림, 국유선박 등)	● 복구소요액	● 국고 100퍼센트. 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 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2)지방공공시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 하천, 소하천, 공립학교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시설,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및 도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 어항, 지방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관리상·하수도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자치단체 소유선박 등)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그 밖의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 시설, 소규모 어항, 특별시·광역시 구역안 도로·시도	●복구소요액	●지방비 100퍼센트	
② 한국농촌공사 수리 시설	●복구소요액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	
③ 사유림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④ 수산시설 (수산물유통제조시설 및 공동창고)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융자 50퍼센트	
⑤ 사립학교	●복구소요액	●지방비 5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비 고

가. 각 시설의 반파시 지원기준은 전파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재난복구사업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라.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가뭄대책	● 수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 국고 50퍼센트 ● 지방비 50퍼센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를 제외한다.
나. 손실보상금 (법 제64조제1항)	● 손실보상 결정금액	● 국고 50퍼센트 ● 지방비 50퍼센트	
다. 특별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법 제61조)	● 자재대 및 장비비	● 국고 50퍼센트 ● 지방비 50퍼센트	● 응급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
라.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 소요금액	● 국고 100퍼센트	

| 별 표 2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1.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추가지원액 기준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	1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3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100억원 이상 ~ 3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5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850억원 이상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2.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지원율 =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③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 정 력 지 수	추 가 지 원 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비 고 :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가. 시 · 군의 경우 : $\frac{\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나. 자치구의 경우 : $\frac{\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다.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 해 예 방 노 력 지 수	추 가 지 원 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비 고 :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가. 재해예방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0.1

나.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보통세

다. 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라. "재해예방사업"이란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자연재해 대책법」 제75조에 다른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 · 군 · 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 별 표 3 |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1	49,500~50,000	50,000,000	36	32,001~32,500	32,500,000
2	49,001~49,500	49,500,000	37	31,501~32,000	32,000,000
3	48,501~49,000	49,000,000	38	31,001~31,500	31,500,000
4	48,001~48,500	48,500,000	39	30,501~31,000	31,000,000
5	47,501~48,000	48,000,000	40	30,001~30,500	30,500,000
6	47,001~47,500	47,500,000	41	29,501~30,000	30,000,000
7	46,501~47,000	47,000,000	42	29,001~29,500	29,500,000
8	46,001~46,500	46,500,000	43	28,501~29,000	29,000,000
9	45,501~46,000	46,000,000	44	28,001~28,500	28,500,000
10	45,001~45,500	45,500,000	45	27,501~28,000	28,000,000
11	44,501~45,000	45,000,000	46	27,001~27,500	27,500,000
12	44,001~44,500	44,500,000	47	26,501~27,000	27,000,000
13	43,501~44,000	44,000,000	48	26,001~26,500	26,500,000
14	43,001~43,500	43,500,000	49	25,501~26,000	26,000,000
15	42,501~43,000	43,000,000	50	25,001~25,500	25,500,000
16	41,201~42,500	42,500,000	51	24,501~25,000	25,000,000
17	41,501~42,000	42,000,000	52	24,001~24,500	24,500,000
18	41,000~41,500	41,500,000	53	23,501~24,000	24,000,000
19	40,501~41,000	41,000,000	54	23,001~23,500	23,500,000
20	40,001~40,500	40,500,000	55	22,501~23,000	23,000,000
21	39,501~40,000	40,000,000	56	22,001~22,500	22,500,000
22	39,001~39,500	39,500,000	57	21,501~22,000	22,000,000
23	38,501~39,000	39,000,000	58	21,001~21,500	21,500,000
24	38,001~38,500	38,500,000	59	20,501~21,000	21,000,000
25	37,501~38,000	38,000,000	60	20,001~20,500	20,500,000
26	37,001~37,500	37,500,000	61	19,500~20,000	20,000,000
27	36,501~37,000	37,000,000	62	19,001~19,500	19,500,000
28	36,010~36,500	36,500,000	63	18,501~19,000	19,000,000
29	35,501~36,000	36,000,000	64	18,001~18,500	18,500,000
30	35,001~35,500	35,500,000	65	17,501~18,000	18,000,000
31	34,501~35,000	35,000,000	66	17,001~17,500	17,500,000
32	34,001~34,500	34,500,000	67	16,501~17,000	17,000,000
33	33,501~34,000	34,000,000	68	16,001~16,500	16,500,000
34	33,001~33,500	33,500,000	69	15,501~16,000	16,000,000
35	32,501~33,000	33,000,000	70	15,001~15,500	15,500,000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71	14,501~15,000	15,000,000	86	7,001~7,500	7,500,000
72	14,001~14,500	14,500,000	87	6,501~7,000	7,000,000
73	13,501~14,000	14,000,000	88	6,001~6,500	6,500,000
74	13,001~13,500	13,500,000	89	5,501~6,000	6,000,000
75	12,501~13,000	13,000,000	90	5,001~5,500	5,500,000
76	12,001~12,500	12,500,000	91	4,501~5,000	5,000,000
77	11,501~12,000	12,000,000	92	4,001~4,500	4,500,000
78	11,001~11,500	11,500,000	93	3,501~4,000	4,000,000
79	10,501~11,000	11,000,000	94	3,001~3,500	3,500,000
80	10,001~10,500	10,500,000	95	2,501~3,000	3,000,000
81	9,501~10,000	10,000,000	96	2,001~2,500	2,500,000
82	9,001~9,500	9,500,000	97	1,501~2,000	2,000,000
83	8,501~9,000	9,000,000	98	1,001~1,500	1,500,000
84	8,001~8,500	8,500,000	99	501~1,000	1,000,000
85	7,501~8,000	8,000,000	100	300이상~500	500,000

비 고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국고추가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부담률을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 별 표 3의 3 |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대통령령 제19144호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 관련)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1	199,001 ~ 200,000	200,000,000	26	174,001 ~ 175,000	175,000,000
2	198,001 ~ 199,000	199,000,000	27	173,001 ~ 174,000	174,000,000
3	197,001 ~ 198,000	198,000,000	28	172,001 ~ 173,000	173,000,000
4	196,001 ~ 197,000	197,000,000	29	171,001 ~ 172,000	172,000,000
5	195,001 ~ 196,000	196,000,000	30	170,001 ~ 171,000	171,000,000
6	194,001 ~ 195,000	195,000,000	31	169,001 ~ 170,000	170,000,000
7	193,001 ~ 194,000	194,000,000	32	168,001 ~ 169,000	169,000,000
8	192,001 ~ 193,000	193,000,000	33	167,001 ~ 168,000	168,000,000
9	191,001 ~ 192,000	192,000,000	34	166,001 ~ 167,000	167,000,000
10	190,001 ~ 191,000	191,000,000	35	165,001 ~ 166,000	166,000,000
11	189,001 ~ 190,000	190,000,000	36	164,001 ~ 165,000	165,000,000
12	188,001 ~ 189,000	189,000,000	37	163,001 ~ 164,000	164,000,000
13	187,001 ~ 188,000	188,000,000	38	162,001 ~ 163,000	163,000,000
14	186,001 ~ 187,000	187,000,000	39	161,001 ~ 162,000	162,000,000
15	185,001 ~ 186,000	186,000,000	40	160,001 ~ 161,000	161,000,000
16	184,001 ~ 185,000	185,000,000	41	159,001 ~ 160,000	160,000,000
17	183,001 ~ 184,000	184,000,000	42	158,001 ~ 159,000	159,000,000
18	182,001 ~ 183,000	183,000,000	43	157,001 ~ 158,000	158,000,000
19	181,001 ~ 182,000	182,000,000	44	156,001 ~ 157,000	157,000,000
20	180,001 ~ 181,000	181,000,000	45	155,001 ~ 156,000	156,000,000
21	179,001 ~ 180,000	180,000,000	46	154,001 ~ 155,000	155,000,000
22	178,001 ~ 179,000	179,000,000	47	153,001 ~ 154,000	154,000,000
23	177,001 ~ 178,000	178,000,000	48	152,001 ~ 153,000	153,000,000
24	176,001 ~ 177,000	177,000,000	49	151,001 ~ 152,000	152,000,000
25	175,001 ~ 176,000	176,000,000	50	150,001 ~ 151,000	151,000,000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51	149,001 ~ 150,000	150,000,000	76	124,001 ~ 125,000	125,000,000
52	148,001 ~ 149,000	149,000,000	77	123,001 ~ 124,000	124,000,000
53	147,001 ~ 148,000	148,000,000	78	122,001 ~ 123,000	123,000,000
54	146,001 ~ 147,000	147,000,000	79	121,001 ~ 122,000	122,000,000
55	145,001 ~ 146,000	146,000,000	80	120,001 ~ 121,000	121,000,000
56	144,001 ~ 145,000	145,000,000	81	119,001 ~ 120,000	120,000,000
57	143,001 ~ 144,000	144,000,000	82	118,001 ~ 119,000	119,000,000
58	142,001 ~ 143,000	143,000,000	83	117,001 ~ 118,000	118,000,000
59	141,001 ~ 142,000	142,000,000	84	116,001 ~ 117,000	117,000,000
60	140,001 ~ 141,000	141,000,000	85	115,001 ~ 116,000	116,000,000
61	139,001 ~ 140,000	140,000,000	86	114,001 ~ 115,000	115,000,000
62	138,001 ~ 139,000	139,000,000	87	113,001 ~ 114,000	114,000,000
63	137,001 ~ 138,000	138,000,000	88	112,001 ~ 113,000	113,000,000
64	136,001 ~ 137,000	137,000,000	89	111,001 ~ 112,000	112,000,000
65	135,001 ~ 136,000	136,000,000	90	110,001 ~ 111,000	111,000,000
66	134,001 ~ 135,000	135,000,000	91	109,001 ~ 110,000	110,000,000
67	133,001 ~ 134,000	134,000,000	92	108,001 ~ 109,000	109,000,000
68	132,001 ~ 133,000	133,000,000	93	107,001 ~ 108,000	108,000,000
69	131,001 ~ 132,000	132,000,000	94	106,001 ~ 107,000	107,000,000
70	130,001 ~ 131,000	131,000,000	95	105,001 ~ 106,000	106,000,000
71	129,001 ~ 130,000	130,000,000	96	104,001 ~ 105,000	105,000,000
72	128,001 ~ 129,000	129,000,000	97	103,001 ~ 104,000	104,000,000
73	127,001 ~ 128,000	128,000,000	98	102,001 ~ 103,000	103,000,000
74	126,001 ~ 127,000	127,000,000	99	101,001 ~ 102,000	102,000,000
75	125,001 ~ 126,000	126,000,000	100	100,001 ~ 101,000	101,000,000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101	99,001 ~ 100,000	100,000,000	126	74,001 ~ 75,000	75,000,000
102	98,001 ~ 99,000	99,000,000	127	73,001 ~ 74,000	74,000,000
103	97,001 ~ 98,000	98,000,000	128	72,001 ~ 73,000	73,000,000
104	96,001 ~ 97,000	97,000,000	129	71,001 ~ 72,000	72,000,000
105	95,001 ~ 96,000	96,000,000	130	70,001 ~ 71,000	71,000,000
106	94,001 ~ 95,000	95,000,000	131	69,001 ~ 70,000	70,000,000
107	93,001 ~ 94,000	94,000,000	132	68,001 ~ 69,000	69,000,000
108	92,001 ~ 93,000	93,000,000	133	67,001 ~ 68,000	68,000,000
109	91,001 ~ 92,000	92,000,000	134	66,001 ~ 67,000	67,000,000
110	90,001 ~ 91,000	91,000,000	135	65,001 ~ 66,000	66,000,000
111	89,001 ~ 90,000	90,000,000	136	64,001 ~ 65,000	65,000,000
112	88,001 ~ 89,000	89,000,000	137	63,001 ~ 64,000	64,000,000
113	87,001 ~ 88,000	88,000,000	138	62,001 ~ 63,000	63,000,000
114	86,001 ~ 87,000	87,000,000	139	61,001 ~ 62,000	62,000,000
115	85,001 ~ 86,000	86,000,000	140	60,001 ~ 61,000	61,000,000
116	84,001 ~ 85,000	85,000,000	141	59,001 ~ 60,000	60,000,000
117	83,001 ~ 84,000	84,000,000	142	58,001 ~ 59,000	59,000,000
118	82,001 ~ 83,000	83,000,000	143	57,001 ~ 58,000	58,000,000
119	81,001 ~ 82,000	82,000,000	144	56,001 ~ 57,000	57,000,000
120	80,001 ~ 81,000	81,000,000	145	55,001 ~ 56,000	56,000,000
121	79,001 ~ 80,000	80,000,000	146	54,001 ~ 55,000	55,000,000
122	78,001 ~ 79,000	79,000,000	147	53,001 ~ 54,000	54,000,000
123	77,001 ~ 78,000	78,000,000	148	52,001 ~ 53,000	53,000,000
124	76,001 ~ 77,000	77,000,000	149	51,001 ~ 52,000	52,000,000
125	75,001 ~ 76,000	76,000,000	150	50,001 ~ 51,000	51,000,000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151	49,500 ~ 50,000	50,000,000	176	37,001 ~ 37,500	37,500,000
152	49,001 ~ 49,500	49,500,000	177	36,501 ~ 37,000	37,000,000
113	48,501 ~ 49,000	49,000,000	178	36,010 ~ 36,500	36,500,000
154	48,001 ~ 48,500	48,500,000	179	35,501 ~ 36,000	36,000,000
155	47,501 ~ 48,000	48,000,000	180	35,001 ~ 35,500	35,500,000
156	47,001 ~ 47,500	47,500,000	181	34,501 ~ 35,000	35,000,000
157	46,501 ~ 47,000	47,000,000	182	34,001 ~ 34,500	34,500,000
158	46,001 ~ 46,500	46,500,000	183	33,501 ~ 34,000	34,000,000
159	45,501 ~ 46,000	46,000,000	184	33,001 ~ 33,500	33,500,000
160	45,001 ~ 45,500	45,500,000	185	32,501 ~ 33,000	33,000,000
161	44,501 ~ 45,000	45,000,000	186	32,001 ~ 32,500	32,500,000
162	44,001 ~ 44,500	44,500,000	187	31,501 ~ 32,000	32,000,000
163	43,501 ~ 44,000	44,000,000	188	31,001 ~ 31,500	31,500,000
164	43,001 ~ 43,500	43,500,000	189	30,501 ~ 31,000	31,000,000
165	42,501 ~ 43,000	43,000,000	190	30,001 ~ 30,500	30,500,000
166	41,201 ~ 42,500	42,500,000	191	29,501 ~ 30,000	30,000,000
167	41,501 ~ 42,000	42,000,000	192	29,001 ~ 29,500	29,500,000
168	41,000 ~ 41,500	41,500,000	193	28,501 ~ 29,000	29,000,000
169	40,501 ~ 41,000	41,000,000	194	28,001 ~ 28,500	28,500,000
170	40,001 ~ 40,500	40,500,000	195	27,501 ~ 28,000	28,000,000
171	39,501 ~ 40,000	40,000,000	196	27,001 ~ 27,500	27,500,000
172	39,001 ~ 39,500	39,500,000	197	26,501 ~ 27,000	27,000,000
173	38,501 ~ 39,000	39,000,000	198	26,001 ~ 26,500	26,500,000
174	38,001 ~ 38,500	38,500,000	199	25,501 ~ 26,000	26,000,000
175	37,501 ~ 38,000	38,000,000	200	25,001 ~ 25,500	25,500,000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201	24,501 ~ 25,000	25,000,000	226	12,001 ~ 12,500	12,500,000
202	24,001 ~ 24,500	24,500,000	227	11,501 ~ 12,000	12,000,000
203	23,501 ~ 24,000	24,000,000	238	11,001 ~ 11,500	11,500,000
204	23,001 ~ 23,500	23,500,000	229	10,501 ~ 11,000	11,000,000
205	22,501 ~ 23,000	23,000,000	230	10,001 ~ 10,500	10,500,000
206	22,001 ~ 22,500	22,500,000	231	9,501 ~ 10,000	10,000,000
207	21,501 ~ 22,000	22,000,000	232	9,001 ~ 9,500	9,500,000
208	21,001 ~ 21,500	21,500,000	233	8,501 ~ 9,000	9,000,000
209	20,501 ~ 21,000	21,000,000	234	8,001 ~ 8,500	8,500,000
210	20,001 ~ 20,500	20,500,000	235	7,501 ~ 8,000	8,000,000
211	19,500 ~ 20,000	20,000,000	236	7,001 ~ 7,500	7,500,000
212	19,001 ~ 19,500	19,500,000	237	6,501 ~ 7,000	7,000,000
213	18,501 ~ 19,000	19,000,000	238	6,001 ~ 6,500	6,500,000
214	18,001 ~ 18,500	18,500,000	239	5,501 ~ 6,000	6,000,000
215	17,501 ~ 18,000	18,000,000	240	5,001 ~ 5,500	5,500,000
216	17,001 ~ 17,500	17,500,000	241	4,501 ~ 5,000	5,000,000
217	16,501 ~ 17,000	17,000,000	242	4,001 ~ 4,500	4,500,000
218	16,001 ~ 16,500	16,500,000	243	3,501 ~ 4,000	4,000,000
219	15,501 ~ 16,000	16,000,000	244	3,001 ~ 3,500	3,500,000
220	15,001 ~ 15,500	15,500,000	245	2,501 ~ 3,000	3,000,000
221	14,501 ~ 15,000	15,000,000	246	2,001 ~ 2,500	2,500,000
222	14,001 ~ 14,500	14,500,000	247	1,501 ~ 2,000	2,000,000
223	13,501 ~ 14,000	14,000,000	248	1,001 ~ 1,500	1,500,000
224	13,001 ~ 13,500	13,500,000	229	501 ~ 1,000	1,000,000
225	12,501 ~ 13,000	13,000,000	250	300이상 ~ 500	500,000

비 고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국고추가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 · 군 · 구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부담률을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발급번호: 제 호

피해자(세대주)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전화번호	
				휴 대 폰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 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수)	지급통장계좌번호	은행 - - -	
	고등학생수	시/군/구 00 고등학교 00 명(국·공립/사립, 실업/비실업계) 시/군/구 00 고등학교 00 명(국·공립/사립, 실업/비실업계)			
	직불카드지급 희망여부	여, 부			

피 해 내 역

피해발생 장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1) 주택

전파	유실	반파	침수	세입자	시설종류	소유면적	임차면적	피해면적	허가번호

2) 농업·임업·염생산시설

3) 수산시설

시설종류	피해면적	면허번호	허가번호	입식규모

4) 어선

건조가격(어망·어구)	유실·전파	반파	등록번호	허가번호	톤수	재질

5)가축·생물

피해종류	폐사수	사육기간	총길이	무게

6)농·산림작물

작물종류	경작면적(소유+임차)	피해면적	인삼생육시기	침수기간

7)소상공인

피해 내용	등록번호	업 태	피해 물량

※ 피해신고 대상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자연재난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또는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 소상공인은 의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 무허가(주택은 제외한다)·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1가구 2주택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관련 보험 가입자, 공무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성 명): (인) 피해자 와의 관계: 본인, 가족, 리·통장, 이웃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장 귀하

「풍수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축사 등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 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성 명): (인) ※ 비고: 동의자는 반드시 시설물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제 호
○ 신 고 자: 성명
○ 피해내역:

위의 신고내용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장 귀하

○ 접수기관 연락처: ( ) -

(뒤 쪽)

상 세 피 해 내 역

1) 주택

전파	유실	반파	침수	세입자	세입자피해발생 장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2) 농업·임업·염생산시설

시설 종 류	규격	소유면적	임차면적	피해면적	단위	허가번호	면허번호	피해구분
비고(시설정보)			피해발생 장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수산시설

시설종류	규 격	피해면적	허가번호	단위	입식규모	건조가격(어망·어구)	피해구분
비고(시설정보)			피해발생 장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4) 어선

동력구분	재질	등록번호	허가번호	(신)톤수	피해구분	피해발생 장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5)가축·생물

피해종류	규격	폐사수	사육기간	총길이	무게	단위	피해발생 장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6)농·산림작물

작물종류	규격	경작면적(소유+임차)	피해면적	단위	인삼생육시기	침수기간	피해발생 장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7)인명피해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구분(사망/실종/부상)	세대구분(세대주/세대원)	피해자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비고			피해발생장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작성요령 –

○ 피해자란 : 재난지원금의 지원현황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소유자를 적습니다.

○ 주소 : 피해자(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및 핸드폰 :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처를 적습니다.

○ 가족수 : 피해 당사자(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적습니다.

○ 지급통장계좌번호 :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고등학생수 :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위한 학생수를 적습니다.

○ 직불카드 : 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한 직불카드 발급의뢰 여부를 적습니다.

○ 피해장소 : 농경지 · 축사 · 수산시설 · 농작물 · 생물 등에 대한 실제 피해주소지를 적습니다.

○ 주택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형태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파(기둥 · 벽체 · 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축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반파(기둥 · 벽체 ·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점포 · 가내공장 등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피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적습니다.

○ 농업 · 임업 · 염생산시설 :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 · 버섯재배사, 농산물 건조시설, 염생산시설(폐 염전은 제외한다) 등으로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 · 신고 등의 번호 · 피해구분(전파 · 반파) 등을 적습니다.

○ 수산시설 :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 어망 · 어구 등 수산시설의 면허 · 허가 · 신고 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어선 : 유실 · 전파 · 반파 어선 중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 면허 또는 신고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어선의 톤수 · 건조년수 및 재질을 적습니다.

○ 가축 · 수산생물: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꿩 등 인공사육, 누에, 넙치 · 숭어 등 어류, 김 · 미역 등 해조류, 굴 등 패조류, 우렁쉥이 등을 기재하고, 수산생물의 경우에는 총 길이 및 무게를 적습니다.

○ 농 · 산림작물 : 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사과 · 배 · 복숭아 · 포도 · 단감 · 감귤 등), 화훼, 버섯, 유실수(밤 · 대추 · 떫은감 · 호도 등), 산림작물(도라지 · 더덕 등) 등으로 생육시기 및 침수기간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 · 패류 · 종묘 입식 및 출하 · 판매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어업권자 (행 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어업권현황	면허(신고 · 허가)번호	제 호	면허(신고 · 허가)기간	
	면허(신고 · 허가)면적	(ha, ㎡)	어장위치	
어업의 종류		시설방법 또는 양식방법		

구 분	품종별	크기(cm · g)	수량(kg)	마리수	입식장소	입식일자
입 식	계					
	그 밖의 사항	종묘 구입처		전화번호		

구 분	품종별	입식년도	크기 (cm)	수량(kg)	마리수	판매단가 (원/마리)	금액 (천원)	잔 량 (마리수)
출하 (판매) 또는 폐사등	계							
	그 밖의 사항	판매일시		연락처				
		판매처						

사료구입 (확보)	구입(확보)일자	구입(확보)처	전화번호	사료명	수량	구입단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어장 안의 어류 등 · 패류 · 종묘 입식 및 출하 · 판매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매매전표 및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정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낙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의 해석을 위한 용어 해설

○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미치는 연근해 해상

제 외 예 시

○ 우리나라 선박이 인도양에서 조업중 태풍에 의해 침몰한 경우
○ 자연현상에 의한 비행기 사고

○ 본인의 귀책사유 범위

–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

○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란 일반적이므로
  – 강풍, 풍랑, 태풍, 호우, 대설, 해일, 파랑에 관한 기상 특보발령기준에 미달되거나
  – 하천인 경우 강우로 인하여 피해지점의 수위가 경계수위 이하인 때
  – 경계 수위가 지정되지 않은 하천에서 피해당시의 수위가 최대통수 가능 유량의 1/2미만인 경우
  – 12시간 강우량이 80㎜ 미만인 때
  – 시우량이 30㎜ 이하인 때
  –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3시간 미만 지속되거나, 파고가 3m 미만인 때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미달된 경우를 말하나 위의 경우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자연재난 임이 명약관화 할 때에는 이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본다.

-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 강우, 강설, 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선박, 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 경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등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피해제외 예시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 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다 피해를 당한 경우 등
○ 행정청 등으로부터 위험지역으로 판단되어 퇴거 또는 대피권고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불응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 하천 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해 사망, 실종된 경우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입은 피해 등
○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으로 무리하게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가다 급류에 사망, 실종된 경우
○ 불어난 하천 물 구경을 하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경우
○ 위험요인이 있는 가운데 농작물 관리를 위해 나갔다가 본인의 실수로 급류에 휩쓸린 경우

○ 직·간접적인 자연현상의 범위
- 홍수, 호우, 폭설,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간접적인 현황

간접적인 현상으로 발생된 인명피해 예시

○ 벼락이 나뭇가지를 절단하여 쓰러지는 나뭇가지가 차에 가해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늘어진 송전선에 감전사한 경우

○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된 경우

–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된 경우란 복구계획 수립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종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사망한 경우의 예시

○ 산사태로 부상하여 흙더미 속에 매몰되었다가 구조작업중 사망한 경우 → 사망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도중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사망
○ 하천 급류에 실종되었다가 사체가 발견된 경우 → 사망

□ 인명피해 처리 세부지침

○ 인명피해 보고 : 발생즉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즉보

– 보고계통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보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보고와 동시 이행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NDMS 인명피해 입력 즉시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 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재입력 지시 등 이행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NDMS 인명피해 해당 입력란에 즉시 입력

○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통계에는 포함시키나 복구계획 수립에서는 제외

○ 피해발생 시도에서는 사망,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주소지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즉시 FAX 등으로 통보

○ 선원인 경우 선주나 선박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V. 색 인

V. 색 인

1가구 2주택 ····· 55
가로수 ····· 92
강풍 ····· 58, 64
공장 ····· 90
구호물품 ····· 32
낙뢰 ····· 81
농경지 ····· 73
농기계보관창고 ····· 66
농산물저장시설 ····· 66
농약대 ····· 75
농작물 ····· 73
누락 ····· 21
대파대 ····· 75
동산 ····· 65, 91
마을기반조성 ····· 46
무허가 주택 ····· 58
불법건축물 ····· 66
비닐하우스 ····· 64
빈집 ····· 45
산사태 ····· 75
선박 ····· 79
선지급 ····· 44
세대원 ····· 28
세대주 ····· 28
수리비 ····· 50
수산생물 ····· 69
신고기간 ····· 21
약용작물 ····· 77
어망·어구 ····· 71
의연금 ····· 33
이재민 ····· 33
인삼재배시설 ····· 65
자연재난피해사실확인서 ··· 94
재난지수 ····· 28
재난지원금 ····· 21
재침수 ····· 54
정산 ····· 47
조경수 ····· 81
종교시설 ····· 93
주생계수단 ····· 37
주택 전·반파 ····· 42
주택침수 ····· 49
중소기업 ····· 90
지방재정공제회 ····· 89
채권압류 ····· 99
축사 ····· 82, 90

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

인 쇄 | 2008년 12월
발 행 |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Tel. 02)2100~5433~5435
Fax. 02)2100~5439

인 쇄 처 | 아람에디트 02)2273-2497